

# 2020 온라인 연구윤리 포럼

| 주제 |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

일시 2020년 3월 27일(금) 14:00-18:00

주최 한국연구재단

주관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후원 교육부, 연구윤리정보센터



# 2020 온라인 연구윤리 포럼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

- **일시** 2020년 3월 27일(금) 14:00~18:00
- **장소** CAST PIA 스튜디오(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 **주최** 한국연구재단
- **주관**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 **후원** 교육부, 연구윤리정보센터
- **세부 일정**



시간	발표 주제	발표	진행
14:00~ 14:30	인사말 - 환영사 - 축사	- 환영사: 엄창섭(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장) - 축사1: 김규태(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 축사2: 노정혜(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축사3: 박장원(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인재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

## 제1부 연구윤리 현장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

14:30~ 15:00	[발표 1] 대학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	조진호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원)	김용환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15:00~ 15:30	[발표 2] 학회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15:30~ 15:50	휴식		

## 제2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대응

15:50~ 16:20	[발표 3] 대학기관 평가인증 연계 연구윤리 핵심 지표 및 기준	강낙원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원장)	장필호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16:30~ 17:00	[발표 4]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안(개정): 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권고사항 추가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연구윤리정보센터장)	
17:00~ 17:30	질의 및 종합 토론	응답: 발표자	이창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팀장)
17:30~	폐회		이인재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

# 환영사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수 엄창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여러 활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연구윤리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국가 발전을 위해 선진국들의 뒤를 쫓던 입장에서 이제는 국제 사회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제대로 된 연구의 수행과 그를 통한 과학 기술의 개발, 산업화는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지대한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진단 능력과 정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의 개발은 생명과학의 단단하고 믿을만한 연구 결과와 이를 실용화시키는 연구자들의 책임감,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기반과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 개개인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연구 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책임있는 연구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믿을만하고 진실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정부 부처, 연구비 지원 및 관리 기관, 각 연구 기관과 유관 단체, 그리고 연구자들의 노력이 모아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조금은 보완할 부분들이 있기에 오늘과 같은 포럼을 통해 서로 의견을 모아 더 올바른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고 체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구윤리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 관련 협안과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행사를 위해 축사를 해주신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님,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박창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포럼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맡아 주신 귀한 연자님, 직접 참여하신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성공적인 포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 기원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고려대학교 교수,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장

엄 창 섭



#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규태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엄창섭 이사장님,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박창원 회장님,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발제를 준비해 주신 전문가 분들과 귀한 시간을 내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실 현장의 전문가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이후 정부 및 대학은 함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체계가 구축·가동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전폭적인 협조 및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음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고, 특히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참여 및 입시 활용 관련 사항은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는 등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응하여 2019년 5월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 이후에는 현장의 전문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요 과제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포럼이 미성년 자녀의 논문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저자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 포럼은 저자 자격뿐만 아니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그동안 교육부 및 연구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온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 주제가 대학 및 연구 현장의 연구윤리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

가 개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시행이 가능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의견 하나 하나에 귀 기울이고 추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당초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을 직접 뵙지 못하는 것은 아쉬우나,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더 많은 분들께서 쉽게 포럼에 참여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2009년 첫 개최 이후, 연구윤리 포럼이 벌써 11살이 되었습니다. 연구윤리 포럼이 지금처럼 연구윤리와 관련된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의 장으로 지속되기를 기원하며,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 규 태

# 축 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세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연구현장을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웹 세미나 방식의 연구윤리 포럼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시는 전국의 참석자 여러 분들, 포럼을 준비해 주신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염창섭 이사장님, 그리고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박창원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학계와 연구계는 최근 1-2년 사이에 크게 불거진 연구윤리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부실한 학술활동, 미성년 공저자가 포함된 부당 저자표시 문제, 표절 등 일반인의 상식과 사회의 눈높이에도 한참 못 미치는 비윤리적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학계와 연구계 전체가 부정적으로 매도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나 연구부적절행위들을 소수의 연구자들에게 국한된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마치 바이러스에 전염되듯 비윤리적인 문화가 연구 생태계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부적절하고 부정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경각심과 예방이 가능한 건강 수칙이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대학과 연구 현장에 널리 알려져야 절대 다수의 연구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학회에서는 연구윤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예상치 않은 사회적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위기 관리에 급급한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게 연구윤리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윤리교육과 자정 노력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도 상존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대학과 학회에서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의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대안도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연구재단도 그동안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종류의 안내서와 가이드라인들을 준비하고 배포해 왔습니다. 연구 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 가이드라인,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라인,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북, 국제 표준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등 재단이 마련한 자료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연구 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기관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연구부정 사건들을 직접 조사하며, 일종의 판례들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우리의 연구문화를 한층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과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 발표를 해 주실 서울교대 이인재 교수님, ‘대학과 학회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조진호, 이효빈 박사님, ‘기관평가 인증 연계 연구윤리 핵심지표 및 기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강낙원 원장님, 온라인상으로 활발히 토론에 참여해 주실 여러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연구계와 학계의 구성원들은 스스로 힘써 건강함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 축 사

연구 윤리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저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일을 맡게 된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박창원입니다.

한국한술단체총연합회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Korean Association of Academic Societies)는 모든 학문분야의 학술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학술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1997년 12월 4일 창립되어 각 계층,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변화의 조류에 보다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선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여러 학문분야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활발한 학술활동에 필요한 제반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연구 윤리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관행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교수의 저서 중 상당 부분을 제자가 작성하거나, 제자의 학위 논문을 지도교수가 공동 저자로 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품앗이 하듯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등의 관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논문이나 저서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합당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 윤리를 제대로 확립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행사 진행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때문에 온 지구가 시끄러운 이때에 다들 건강하시고, 연구 윤리의 확립을 위한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7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박 창 원

# • C O N T E N T S •

(발표 1)

- 1 ... 대학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  
조진호(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원)

(발표 2)

- 19 ... 학회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  
이효빈(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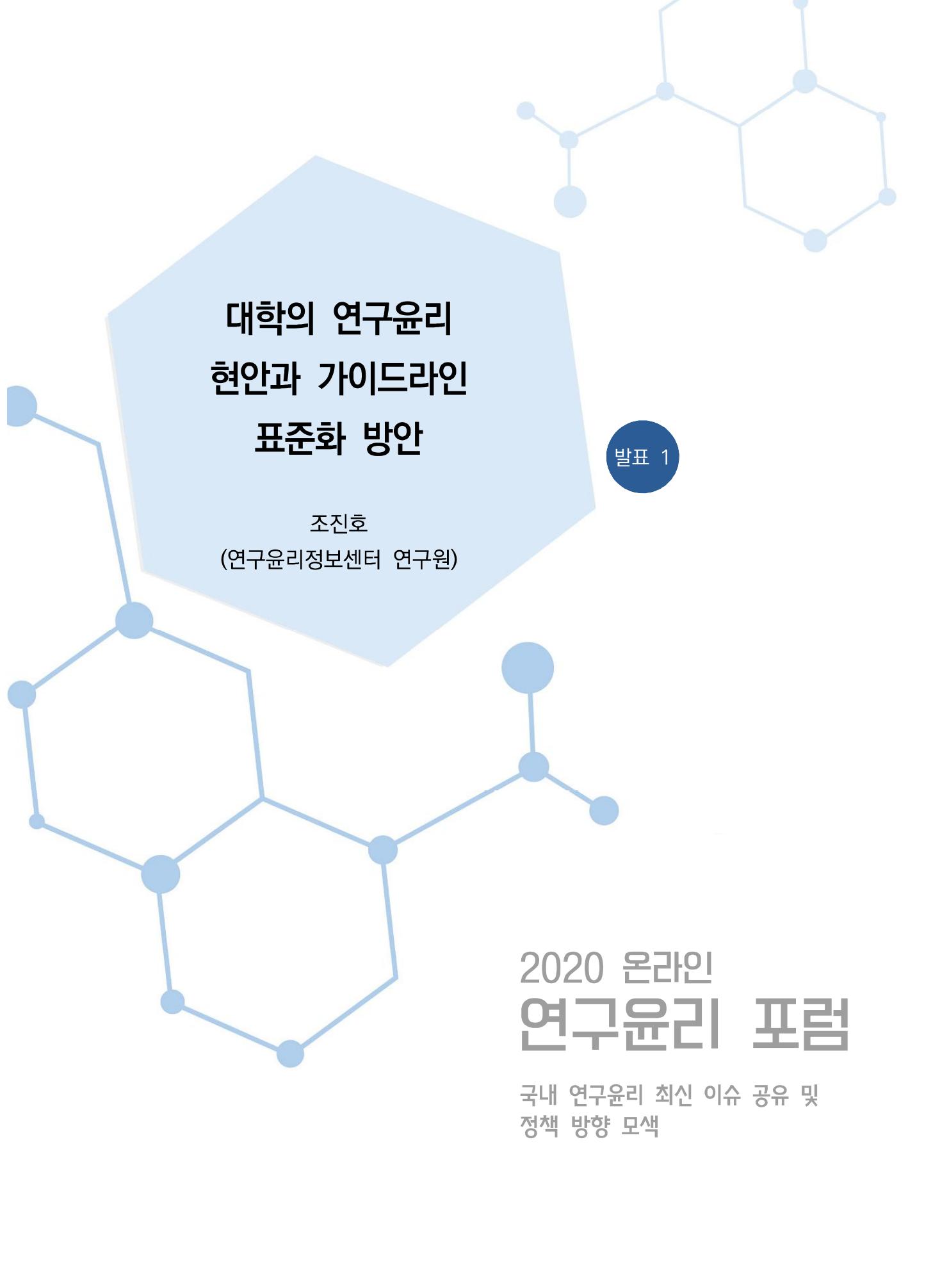
(발표 3)

- 33 ... 대학기관 평가인증 연계 연구윤리 핵심 지표 및 기준  
강낙원(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원장)

(발표 4)

- 49 ...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안(개정):  
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권고사항 추가  
이인재(서울교대 교수, 연구윤리정보센터장)

“본 <2020 온라인 연구윤리 포럼> 자료집의 내용들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정책 연구과제 결과(초안)의 발표 자료로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연구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니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

조진호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원)

발표 1

## **2020 온라인 연구윤리 포럼**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



발표 1

## 대학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

조진호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원)

2020 연구윤리 포럼

## 대학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

2020년 3월 27일  
조진호 (연구윤리정보센터)

- 1 -

## CONTENTS

1 연구 목적	2 연구 절차	3 설문 결과	4 워크샵 결과	5 개선 방안	6 추가 제언
대학의 현황 연구 필요성	대학 선정 설문 조사 자문 워크샵	시스템 조사 심층 설문 조사	현장 문제 파악 전문가 조언	가이드라인 도출	대학 및 교육부 추진 방향

- 2 -

## 1 연구 목적

### (A) 대학의 현황

대학 연구윤리 현황과 문제점: 외형적 성장은 완성 단계, 이젠 질적 성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기

외형적 성장의 완숙	내실 확충과 질적 도약의 필요성
1) 전국 4년제 대학 97.7%에 연구윤리 규정 마련 2) 전국 4년제 대학 93.2%에 연구윤리 기구 설치 (국공립대학 100%, 사립대학 91.2%)	1) 연구진실성 관련 규범의 적실성 확충 2) 연구진실성 관련 기구의 독립성 강화 3) 관련 기구 실질 활동의 예산 확보 노력 4) 연구윤리 관련 인적 자원의 전문성 강화

### (B) 연구 필요성

아래와 같이 대학 연구진실성 확립 활동의 질적 측면에서 내실 강화 요소를 충족해야 함

#### 1) 연구진실성 관련 규범의 적실성 확충

- 대학 자체 규정이 2007년~2018년 지침까지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
- 교육부 지침이 아닌 과학기술부 규정에 근거(아이디어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에 차이)
- 교육부 지침 이외 사항에 대한 자체 규정 필요(교육부 지침은 국가 지원 관련 최소한의 규정)

- 3 -

## 2) 연구윤리 기구의 독립성 강화

- a) 총장, 학장 등 주요 인사로부터의 독립성 보장 선언 규정 필요
  - ⇒ 총장 선거 등에서 연구진실성 논란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 b) 조사위원의 기밀 유지와 신변 보장 등 보호 장치 필요
  - ⇒ 연구진실성 검증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기 형성

## 3) 실질 검증 활동의 예산 확보 노력

연구윤리 교육, 연구진실성 검증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1천만원 이하인 사례 다수 존재

- ⇒ 실질적 활동 수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 사안 발생 시 임시 예산 편성을 대학 재정에도 부담

## 4) 연구윤리 관련 인적 자원의 전문성 강화

- a) 1인 전담, 1년 단위 보직 순환 ⇒ 인사 변경 시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
- b) 연구 유경험자 아닌 행정직원 배치 ⇒ 연구윤리 교육과 지식 확보 확인 필요
- c) 연구 경험과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인력 ⇒ 자율적인 법령 해석과 적용 능력 필요
  - ⇒ 연구윤리 전문 인력의 자체 양성과 확보 노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4 -

## 2 연구 절차

### (A) 대학 선정

- 1) 국가 연구참여 비중: “대학 알리미 공시” (2019) 연구비 지원 순위 상위권 10개 대학
- 2) 권역별 대표성 보완: 중소 규모 2개 대학(서남권 순천대학교, 동남권 동아대학교)

순번	고분	대학명	권역	비고
1	국립(법인)	서울대	수도권	연구비 상위
2	사립	연세대	수도권	연구비 상위
3	사립	성균관대	수도권	연구비 상위
4	사립	고려대	수도권	연구비 상위
5	사립	한양대	수도권	연구비 상위
6	사립	경희대	수도권	연구비 상위
7	국립(특수)	KAIST	충청권	연구비 상위
8	사립	포항공대	동남권	연구비 상위
9	국립	경북대	동남권	연구비 상위
10	국립	전남대	서남권	연구비 상위
11	국립	순천대	서남권	권역별
12	사립	동아대	동남권	권역별

- 5 -

**(B) 설문 조사**

**(1) 연구진실성 확보 시스템 조사**

2018년 기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 조항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 항목 설정  
대학별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비교, 차이점 및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분석

**1) 대학별 연구윤리 관련 규정 업데이트 현황 파악 및 비교**

- a) 규정 업데이트 현황
- b) 규정 적용 대상 및 적용범위
- c)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 정의 및 범위
- d)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 및 역할
- e)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절차와 창구 개설 여부(예비조사, 본조사)
- f)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보호 장치 확보
- g) 판정의 공지, 이의신청 및 처리, 재조사 실시 절차 등
- h) 판정 후 상위기관 보고 체계 여부
- i) 판정 후 제재 조치와의 연계성(조사위원회의 권한 여부)
- j) 검증 시효의 유지 여부

**2) 대학별 연구윤리 관련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 a) 연구윤리 관련 조직 전문화 여부
- b) 연구윤리 업무 전문 인력 배치 현황과 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 여부

- 6 -

**(2) 심층 설문조사**

- 1) 연구윤리 실무 담당자 대상 서면 조사
- 2) 연구윤리 업무 현장의 다양한 문제 상황
  - a) 제반 법령 및 규정의 상충 경험 사례 수집
  - b) 최근의 현저한 연구부정행위 사례 경향 파악
  - c) 현장에서 검증, 판정 및 후속 절차의 애로 사항 수집
  - d) 새로운 지침 규정 기준 개발이 필요한 특수 사례 수집

- 7 -

(C) 자문 워크샵

- (1) 1차 전문가 자문회의: 대학 연구진실성 업무 담당자 참여(2020년 2월 4일)
  - 1) 대학 연구윤리 규정 비교 검토 결과, 연구윤리 확보 시스템의 공통적인 경향과 차이점 발표
  - 2)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명확성과 범위의 적절성 검토(특정 부정행위 유형 포함 여부 등)
  - 3)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을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대한 의견
  - 4) 연구부정행위 판단 원칙의 타당성 의견
  - 5)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의 타당성 의견  
(연구부정행위 접수, 처리,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등)
  - 6) 조사위원회의 구성,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청의 조건, 순서, 처리 기한, 조사 결과의 제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7)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시효 적용에 대한 의견
  - 8) 기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대학·연구기관 차원의 제도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
  
- (2) 1차 전문가 자문회의 요구사항
  - 1)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추가
  - 2) 악의적이고 행정 낭비적인 제보 방지를 위한 보완 필요
  - 3) 대학과 학회 간의 검증 불일치 시 우선순위, 대학과 학회의 연구부정행위 통보 근거
  - 4) 연구부정행위 제재(징계) 수준에 대한 지침 필요성

- 8 -

(3) 2차 전문가 자문회의: 대학 연구진실성 업무 담당자 및 연구윤리 전문가 참여(2020년 2월 27일)

- 1) 연구진실성 검증과 연구윤리 관련 조직 운영의 표준 개선 모델 제시
  - 2) 1차 회의를 거쳐 도출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안)에 실무자 대상 적절성 평가 및 수정 의견 파악
  - 3) 가이드라인 포함 내용의 지지와 그 근거, 삭제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
- 
- (4) 2차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사항
- 1) 현행 교육부 훈령 지침 기반 연구윤리 지침 적용 및 해석 가이드라인 초안 검증
  - 2) 연구진실성 확보 시스템 관련: 전담기구 제도화 명시, 전문성·독립성 확보, 예산 확보, 연구윤리 교육 체계의 운영 주체 명시 등
  - 3) 연구진실성 검증 프로세스 관련: 제보 접수, 조사위원회 구성, 판정 후 보고 및 공개, 타 대학 및 기관과의 공동 검증 절차 운용 등
  - 4) 연구부정행위 검증 판단: 모호한 연구부정행위/연구부적절행위 양태 및 판단 기준 모색
  - 5) 향후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에 반영 필요한 대학 및 학문별 전문가와 담당자 의견 수렴

- 9 -

### 3 설문 결과

#### (1) 연구진실성 확보 시스템 조사

구분	내용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E대학	F대학	G대학	H대학	I대학	J대학	K대학	L대학	비고
0 규정 업데이트 현황	연구윤리규정	'10.07	'17.03	통합↓	'19.06	'10.01	'16.07	'12.05		'12.07	통합↓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규정	'14.12	'19.09	'19.04	통합↑	'17.10	통합↑	'19.08	'16.05	'19.04	'19.09	'19.11	'14.06	
1 규정 적용 대상	교원	○	○	○	○	○	○	○	○	○	○	○	○	12%교
	연구원	○	○	○	○	○	○	○	○	○	○	○	○	12%교
	대학원생	○	○	○	○	○	○	○	○	○	○	○	○	13%교
	학부생	-	○	-	○	○	○	○	○	○	○	○	○	10%교
2 규정 적용 범위	직원	-	○	-	-	○	○	○	○	○	○	○	○	9%교
	부정·석설·범위 (타법령·자체규정)	정하지 않음	○	○	-	-	-	-	-	-	-	○	○	4%교
	구분하여 적용	-	-	-	○	○	○	○	○	○	○	-	-	7%교
3-1 연구부정행위 범위	자체 규정 우선	-	-	○	-	-	-	-	-	-	-	-	-	12%교
	위조, 변조, 표절	○	○	○	○	○	○	○	○	○	○	○	○	12%교
	부당한 저지표시	△*	○	○	○	○	○	○	○	○	○	○	○	12%교
	부당한 증복개재	△*	○	○	○	○	○	-**	△	○	○	○	-	10%교
	조사 빙해	○	○	○	-	○	○	○	○	○	○	○	○	11%교
	제보자 협박 위해	-	○	-	-	○	○	○	○	○	○	○	○	9%교
	행위 강요 제안	-	○	-	-	○	○	○	○	-	○	○	△	7%교
	행위 방조	△	-	-	-	-	-	-	-	-	-	-	△	2%교
	행위 은폐	△	-	-	-	-	-	-	-	-	-	-	△	2%교

\* A대학(2014년 기준) L대학(2014년 기준) : 부당한 저지표시, 부당한 증복개재, 부정행위 강요, 제안, 방조, 은폐 등을 “부적절 행위”로 규정

\*\* F대학 : 2012년 규정 기준, 부당한 증복개재 관련 기준 없음(2016년 현 규정은 부정행위 조항 별도 분리)

\*, \*\* : 상기 대학의 2015년 이후 교육부 지원 개선 반영 확인 불가

- 10 -

구분	내용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E대학	F대학	G대학	H대학	I대학	J대학	K대학	L대학	비고
3-1-1 징계 등 제재와의 연계(조사위원회)	개입 가능	요청	요청	건의	-	건의	권고	건의	건의	건의	권고	권고	-	10%교
	영향력 미약	-	-	-	총장 보고	-	-	-	-	-	-	-	부서 이첩	2%교
3-2 연구부적절행위	규정 내 포함	○	-	-	○	○	-	-	-	-	-	-	○	4%교
4-1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재 시 임무대행	부 위원장 지명	위원장 지명	부 위원장	-	부 위원장	-	-	-	-	부 위원장	순서에 따라 위원장	부 위원장	7%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역할	△*	-	-	-	-	-	-	-	-	○	-	-	2%교
4-2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운영 특징	상설화	○	○	-	-	-	-	-	-	-	-	-	-	2%교
	독립성	-	○	-	○	-	-	-	-	-	-	-	○	3%교
4-3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운영 특징	예산	○	○	○	-	○	-	-	-	○	○	-	-	6%교
	제보 접수 절차와 칭구 개설 여부	제보 방법	○	○	○	○	○	○	○	○	○	○	○	12%교
5-2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의명 제보	○	○	-	-	○	○	○	○	○	○	○	○	10%교
	구성원의 기준	○	○	○	-	○	○	○	○	○	○	○	○	11%교
	구성원 수 규정	○	○	○	-	○	-	-	○	○	-	○	○	8%교
5-3 본조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선임방법	○	-	○	○	-	-	-	-	○	-	-	-	2%교
	구성원의 기준	○	○	○	○	○	○	○	○	○	○	○	○	12%교
	위원회 선임방법	○	-	○	○	-	-	-	○	○	○	○	○	8%교

\* A대학 : 연구부정행위 예방조치 실시

- 11 -

구분	내용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E대학	F대학	G대학	H대학	I대학	J대학	K대학	L대학	비고
5-4	조사위원의 보호(사전 비공개)	-	○	-	○	-	-	-	-	-	-	○	-	3개교
6-1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보호 (제처과 기피사유)	○	○	-	-	○	○	○	○	○	○	○	○	10개교
6-2	허위제보 보호 제외	○	○	○	-	-	○	○	○	○	○	○	○	10개교
	허위제보 징계	○	○	-	-	-	-	-	○	-	-	○	-	4개교
	보복방지 및 제재 조치	○	-	-	-	○	-	○	-	○	-	○	-	4개교
7-1	판정의 공지(절차 규정) 판정 공지의 대상	○	○	○	○	○	-	○	○	○	○	○	○	11개교
7-2	신청기간	○	○	○	○	○	○	○	○	○	○	○	○	12개교
	신청방법	○	-	○	○	○	○	○	○	○	○	○	○	11개교
	신청대상	○	○	○	○	○	○	○	○	○	○	○	-	11개교
7-3	제조사 실시(재심의 기간)	○	○	-	○	○	○	○	○	○	○	○	○	11개교
8-1	판정 후 상위기관 보고	-	-	-	-	-	○	○	-	○	○	○	○	6개교
8-2	판정 후 공개 여부 (대상, 내용, 공개방법 등)	○	○	○	○	○	○	○	○	○	○	○	○	12개교
8-3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공개 여부	-	-	-	○	○	○	○	○	○	○	○	○	9개교
8-4	최종보고서 작성 (제작 내용과 수준)	○	○	○	-	○	○	○	○	○	○	○	○	11개교
9	판정 후 경계 조치와의 연계성 (조사위원회 권한)	○	○	○	○	○	○	○	○	○	○	○	○	12개교

- 12 -

구분	내용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E대학	F대학	G대학	H대학	I대학	J대학	K대학	L대학	비고
10	검증 시효	유치 여부	-	-	-	-	-	-	5년	10년	-	5년	-	3개교
		적용 대상	-	-	-	-	-	-	자체만	자체만	-	전체	-	3개교
11	연구윤리(잔실성) 위원회	조직 구성	○	○	○	○	○	○	○	○	○	○	○	12개교
		전담 인력 배치	○	○	○	○	○	○	○	○	○	○	○	10개교
11	생명윤리위원회	조직 구성	○	○	○	○	○	○	○	○	○	○	○	12개교
		전담 인력 배치	○	○	○	○	○	○	○	○	○	-	○	11개교
11	실험동물위원회	조직 구성	○	○	○	○	○	○	○	○	○	○	○	12개교
		전담 인력 배치	-	-	○	○	○	○	○	○	○	○	○	10개교
11	생물안전위원회	조직 구성	○	○	○	○	○	○	○	-	○	-	-	9개교
		전담 인력 배치	○	○	○	○	○	○	○	-	○	-	-	9개교
12	전문 인력 현황과 전문성 확보	연구윤리 업무 간사 배치	○	○	○	○	○	○	○	○	○	○	○	12개교
		전문위원 배치	○	○	-	○	○	-	-	○	-	-	-	5개교
		배치된 인력의 학위	-	-	-	-	-	-	-	-	-	-	-	-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규정 및 설시	○	○	-	-	○	-	-	○	-	○	○	6개교

- 13 -

구분	내용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E대학	F대학	G대학	H대학	I대학	J대학	K대학	L대학	비고
13 독립성 확보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정	독립성 보장 규정부록	-	-	-	○	-	-	-	-	-	-	-	○	2%교
	인원	11인이내	10인이내	9인	7인이내	9인	9인	1~10인	9명	9인이내	7인~1인	9인	9인	12%교
	위원장(단여적)	연구처장, 교务처장	교务처장, 연구처장, 교务처장, 연구윤리 센터장	일반 대학원장, 교务처장, 교务처장, 신학협력 단장	연구처장	부총장, 교务처장, 신학협력 단장	연구처장, 교务처장, 교务처장, 신학협력 단장	-	대학원장, 교务처장, 연구처장	연구 선팩처장	신학협력 단장	부총장, 대학원장, 교务처장, 교务처장, 신학협력 단장	부총장, 교务처장, 신학협력 단장	11개교
	그밖에 위원	본교 전체교수 총장 임명	우편지 위탁으로 전원교수총 총장임명	-	총장외속 (다른분야 언급없음)	조교수 이상의 전원교수총 총장임명	전원교수총 임명으로 총장이 임명	본교 외부와 내부의 인사 총 총장임명	조교수 이상의 전원교수총 총장임명	조교수 이상의 전원교수총 총장임명	조교수 이상의 전원교수총 총장임명	위촉직 위원	조교수 이상의 전원교수총 총장임명	11개교
	임기*	2년 (추천회)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2년	11개교
	위원장	위원장 호선	연구 분부령	총장외 속 (연구처 장제외)	부총장	-	연구처장	위원장 호선	위원장 호선	대학원장	부총장	부총장	11개교	
	부위원장	위원장 호선	-	위원장 호선	-	신학협력 단장	-	-	-	위원장 호선	-	-	신학협력 단장	5개교
	간사	전문위원 중 한명	연구윤리 센터장	신단강연 지원팀장	연구처장	연구진총 팀장	연구진총 팀장	연구진총 팀장	연구간사 팀장	연구간사 팀장	연구지원 팀장	신학협력 단장	신학협력 단장	12개교
	선임방법	위원장 호선	당연직	총장 위촉	총장 위촉	당연직	당연직	당연직	위원장 호선	위원장 호선	당연직	당연직	당연직	12개교
	임기보정*	2년	-	-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보조책임 기간	9개교
	겸직여부	-	연구 분부장	-	-	부총장	연구처장	연구처장	-	-	신학협력 단장	부총장	부총장	7개교

\* 위원/위원장 임기 2년 또는 당연직은 겸직 임기 연동 / \* 박사학위 소지자 규정: IACUC(A대학, B대학, D대학, G대학), 생물안전위(D대학)

- 14 -

## (2) 연구윤리 담당자 심층 설문조사

### 1) 현 대학별 연구윤리 관련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 1) 조직의 전문화 여부

여기서 연구윤리 조직이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윤리위원회” 등을 말합니다.
• 귀 대학의 연구윤리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시된 3개 조직이 모두 존재하는지, 설치되지 않은 조직이 있는지,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
▣ 조사대상 12개 모든 대학에 3개 연구윤리 관련 조직 모두 별도로 존재
• 각 조직별로 전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모든 대학에 3개 연구윤리 관련 규정 모두 존재
• 각 조직을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 + 직원 1인 이상)
▣ ① 모든 조직에 전담인력 배치. 단, 대부분의 대학들이 당연직 또는 겸직으로 업무 수행 중 ▣ ② 교수들이 연구윤리 업무를 기피하므로, 당연직으로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음 ▣ ③ 당연직 수행은 조직 운영 및 연구윤리 판단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서 미흡할 수 있음 ▣ ④ 총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구부총장, 연구처장, 신학협력단장 등이 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독립성 확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2)과 (4) 사이의 규명 필요

#### 2) 연구윤리 업무 전문 인력 배치 현황과 전문성 확보 여부

여기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각 조직에 배치된 직원이 타 업무를 중복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중복으로 담당하고 있다면) 어떤 업무와 중복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 15 -

<p>① 6개 대학들이 연구 행정(연구처, 신학협력단 등) 업무와 중복으로 업무 담당          ② 연구윤리 전문성 확보에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연구 행정은 공문 처리와 회계가 중심이 되는 반면, 연구윤리는 철학적/법적 가치 판단을 주로 해야 하므로, 위원장 대상 교육 연수 필요)          ③ 단, A대학, B대학, G대학은 연구윤리 유관업무(생명윤리, 동물실험 등)와 중복으로 업무 담당. (2)보다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인 분화 필요          ④ G대학은 직원 1명이 모든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된 구성원(들)의 숫자와 학위 수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박사학위, 교수, 식민I(박사과정), 식민II(석사학위) ...)</li> </ul>	
<p>① 위원장은 모두 박사학위자          ② 직원은 박사학위자 5개 대학, 석사학위자 3개 대학, 학사학위자 2개 대학(포스텍, 순천대)          ③ 직원의 학위 수준을 석사 이상(논문 발표 경험자)으로 상향해야 할 필요성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들)의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가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까?</li> </ul>	
<p>① 2개 대학(B대학, K대학)만 규정에 포함          ② 교수 신분의 구성원은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단연직으로 포함되는 연구부총장, 연구처장, 신학협력단장 등은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연구윤리 교육에서 누락될 수 있음. 임기 도중 연구윤리 교육 이수자격(2년 또는 3년)이 유효할 수 있도록 확인 장치 필요          ③ 직원들도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연수 필요성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들)의 연구윤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실시되고 있다면) 얼마나 자주 실시되고 있습니까?</li> </ul>	
<p>대학 전체 차원에서 매년 1~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여기에 공동 참여하는 형태            (교육 내용은 연구윤리 일반, 교육 방식은 전문 강사 초청이 주된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들)이 최근 3년 동안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li> </ul>	

- 16 -

<p>① 9개 대학의 구성원들은 모두 연구윤리 교육 경험이 있음          ② 2020년 신규 별령자는 연구윤리 교육 경험이 없음. 인기 초기(발령 후 수개월 이내)에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유지하도록 확인 장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장: ( )년, 직원: ( )년</li> </ul>	
<p>① 위원장: 평균 4.0년 (최단 2년~최장 10년(A대학), L대학은 늘 임기 빠름)          ② 직원: 평균 4.4년 (최단 2년~최장 8년(B대학), F대학은 임기 빠름)          ③ 위원장 장기 재임(A대학 10년, I대학 8년, D대학 5년 등)은 총장의 직접 임명에 의한 것으로, 이는 교수들의 연구윤리 업무 기피 현상에 기인함          ④ 교수들의 위원장 기피로 인한 총장의 직접 임명과 위원회 독립성 확보 사이의 균형 필요</p>	
<h3>3) 독립성 확보 여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li> </ul>	
<p>① 1개 대학(D대학)만 있음          ② 영문위원 규정 도입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총장/부총장/연구처장/학장 등의 지명, 당연직, 추천직, 선출직 등)</li> </ul>	
<p>① 당연직 + 추천직을 총장이 임명          ② 교수들의 기피 현상 때문에 당연직은 불가能做到. 단, 독립성 확보에 치악하므로 군형 필요          ③ G대학은 총장이 전원 임명. 독립성 확보에 매우 취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는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내부: ( )명, 외부: ( )명)</li> </ul>	

- 17 -

<p>① 전체 인원은 7인~11인 규모</p> <p>② 9개 대학이 내부 인사(교수급)로만 위원회 구성('본조사위원회'의 외부 인사 의무사항은 준수)</p> <p>③ G대학만 유일하게 외부 인사 2인을 포함</p> <p>④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소수의 외부 인사 포함을 제시하는 것이 긍정적('자외이자'와 유사한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은 어떤 방식을 통해 임명됩니다?</li> </ul> <p>(예: 총장/부총장/연구처장/학장 등의 지명, 당연직, 추천직, 선출직 등)</p> <p>① 6개 대학이 당연직으로 임명(부총장, 대학원장, 연구처장)</p> <p>② 2개 대학이 호선(A대학, 대학)</p> <p>③ 2개 대학이 총장 임명(C대학, D대학)</p> <p>④ 당연직 또는 총장 임명은 독립성 확보에 부정적이나, 교수들의 기피 현상으로 불가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다?</li> </ul> <p>① 당연직은 겸직 임기와 동일(통상 2년)</p> <p>② 호선 방식의 I대학, 총장 임명의 C대학, D대학 동일하게 2년. D대학은 연임 가능</p> <p>③ A대학은 임기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은 겸직이 가능합니까?</li> </ul> <p>④ 모두 겸직 가능(당연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겸직 불가 조항 없음)</p>

## 2. 면담 항목

### 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전반

- 18 -

• 귀교는 연구윤리 학습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3.0%]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2	7	2	2	0
• 귀교는 연구윤리 학습을 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1.5%]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1	2	7	3	0
• 귀교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3.0%]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3	9	1	0	0

- ①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② 연구윤리 교육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③ 연구윤리 교육 강화 노력을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업무로 명확화할 필요 있음

### 2) 교육부 지침과 대학 자체 규정 적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 대학 자체 규정을 적용할 때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상충되는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사례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① 억명 제보의 인정 또는 수용 범위 ② 행위 범위 : 1) 연구부정행위 범위에서 교육부 지침과 대학 지침의 불일치 2) 지침에는 "연구부적절행위"가 없으나 현장에서는 연구부적절행위도 검증함 ③ 조사위원회 명단 공개 가능성 : 1) 현행 지침에는 사전에는 제보자에게 공개, 기피 신청 가능. 사후에는 피조사자에게 공개, 이의신청 가능 2) 제보자의 기피 남용이나, 피조사자의 보복 가능성 등이 조사위원을 위축시킴 ④ 용어 통일 필요 : "부당한 중복 계재"와 "이중 계재"				
④ 용어 통일 필요 : "부당한 중복 계재"와 "이중 계재"				
④ 용어 통일 필요 : "부당한 중복 계재"와 "이중 계재"				
④ 용어 통일 필요 : "부당한 중복 계재"와 "이중 계재"				
• 현 교육부의 지침에서 수정, 삭제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9 -

- ① 4개 대학 : 검증 시효 추가 필요(오래된 연구과제는 자료 확보가 어려움)
- ② 2개 대학 : 조사위원과 실무담당자 보호 조치 필요
- ③ 적절한 징계 수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 ④ 본조사위원회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격 조건
- ⑤ 공동연구 검증 시, 주제에 대한 규정
- ⑥ 자체 재조사 규정이 없으면, 25조 이의신청과 28조 재조사 조항 상충 가능
- ⑦ 익명 제보 제한 필요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과정에서 보안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4개 대학 : 조사위원, 실무담당자, 피조사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
- ② 2개 대학 : 조사위원(전문가) pool 구축과 대학간 공유
- ③ 예비조사 검증시상 명확화
- ④ 이의신청/재조사 번복에 대한 제한 필요

### 3) 연구부정행위 검증

• 연간 연구부정행위 제보건수와 평균적인 처리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 ① 5개 대학이 연간 10건 이상, 4개 대학이 연간 5건 이하
- ② 1대학은 2018년 40건 이상, 이는 교육부 전수조사를 포함한 수치로 추정
- ③ 평균 5.4개월 소요. 지침 규정이 6개월 이내이므로 양호
- ④ 최단 C대학 2개월, 최장 G대학 10개월

• 부정행위 판정 비율 및 후속 징계 양형을 말씀해 주십시오.

- ① 4개 대학(A, C, J, K)이 50% 이상, 3개 대학(B, D, I)이 10% 이하 부정행위로 판정
- ② 징계 수위는 시안에 따라 다양

- 20 -

• 최근 연구부정행위 시례의 경향은 어떠합니까?

- 모든 대학이 “부당한 저작 표시” 문제를 지적

• 대학에서 특별히 규정으로 정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윤리 문제가 있습니까?

- ① 2개 대학 : “연구부적절행위” 규정의 명확화 필요
- ② 징계 수위의 가이드라인 필요
- ③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 ④ 이의신청 반복 제한

• 다음의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 연구부정행위 판단 기준 관련 의견이 있습니까?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기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에는 연구윤리 학보를 위한 거짓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제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번역에 가 하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번역을 신기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동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보통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3개 대학 : 모호한 표현보다는 명확한 예시 필요
- ② “연구부적절행위” 관련 내용 추가 필요
- ③ 고의성, 악의성, 언급 추가 필요

### 4) 연구윤리교육의 어려움, 개선해야 할 사항

• 연구윤리 교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5개 대학 : 연구책임자(교수급)의 교육 참석 저조
- ② 4개 대학 : 교육 이수 의무화 필요
- ③ 2개 대학 : 강사·설외의 어려움(인력, 일정 소정)
- ④ 교육의 일관성 부족(교육 주제와 교육 방식(온/오프라인)이 다양하게 혼재함)

• 연구윤리 교육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1 -

- ☞ ① 4개 대학 : 교육 이수 의무화 필요
- ☞ ② 3개 대학 : 연구윤리 담당자 교육 필요
- ☞ ③ 교육방식 다양화: 교육부 교육, KIRD 교육, 자체 교육 등을 모두 인정

## 5) 정책 관련 건의 사항

-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정책과 관련하여 건의하고 싶은 시항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3개 대학 : 악의적 제보 또는 익명 제보 검증 장치 필요
  - ☞ ② 2개 대학 : 검증 전후 분쟁을 막기 위한 장치, 조사위원 비공개 등 필요
  - ☞ ③ 2개 대학 : 국회, 교육부 등의 소모적인 전수조사 요구와 언론 유출 방지
  - ☞ ④ 교육 강사와 조사위원의 인력 pool 확충 및 공유
  - ☞ ⑤ 재조사는 1차 조사기관이 아닌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적절
  - ☞ ⑥ 연구윤리 신문가 교육과정에 실무담당자도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22 -

## 4 워크샵 결과

### (1) 현장 문제 파악

⇒ 대학 현장의 연구진실성 실무자들이 제기한 쟁점들

(1) 연구자의 범위 – 대학원생의 적용 대상 포함 여부	(13) 공동 연구과제에서 검증 책임 상호 기피
(2) 연구결과물의 범위 – 예술작품, 저서 등의 적용 범위 포함 여부	(14) 연구진실성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3) 대학원생의 ‘연구결과물’ 범위 – 학위논문 이외의 연구 활동 포함 여부	(15) 명확한 판정 의결 기준의 부재
(4)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부족	(16) 예비조사위원회 구성과 역할의 명확한 기준 부재
(5) 연구진실성 담당 기구의 명칭과 구성의 불명확성	(17)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6) 제보 접수창구 운영 주체의 불명확성	(18) 익명 제보자 본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 예방
(7) 아이디어 표절의 구체적인 예시 필요	(19) 제보자의 조사위원 과다 기피 신청
(8) ‘부당한 중복게재’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문제(부처간 법령 불일치)	(20) 연구부정행위자 징계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
(9) 연구부정행위 은폐, 증거인멸 및 지시, 강요 등에 대한 규정 불충분	(21) 연구부정행위 조사기간 6개월 제한의 타당성
(10) 허위 제보에 의한 연구진실성위원회 업무수행 방해	(22)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반복적으로 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의 대응
(11) 익명 제보의 접수 허용 여부	(23)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 와 ‘10일 이내’ 조사결과 보고서의 제출
(12) 만복 제보 또는 허위 제보에 대한 대응	(24) 조사위원회 명단 공개의 부담
	(25)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조사기록 보관 기한 논란

### (2) 전문가 조언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전문가(엄창섭 교수, 이인재 교수, 현명호 교수 등) 중심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작에 반영

- 23 -

## 5 개선 방안

### (A)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안)의 기본 방향

#### (1) 연구윤리 적용 대상 확대

- 1) 인적 범위: 기본 구성(교수, 연구원) +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포함
- 2) 물적 범위: 학술 저서, 예술작품, 학위논문 자격구성 과제물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

#### (2) 연구부정행위 범위 확대

##### 1) 추가 정의

a) 사전 취득 정보(privileged information)에 의한 표절

b) 연구부정행위 지시, 강요 행위

c)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허위 반복 제보에 대한 대응, 제보자 및 조사위원 위해 예방)

#### (3) 연구윤리 전담기구 명확화

1) 연구윤리 확산, 부정행위 검증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역할로 명시(특립성, 예산 보장 필요)

2)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 구성 조건의 명확화(인원, 자격)

- 24 -

### (B)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안)의 필요성

(1) 기본 원칙으로서 함축적으로 규정된 지침을 대학 및 연구기관 현장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적용할 때 다양한 해석상의 오해와 그에 따른 연구진실성 업무 처리의 애로사항 발생

(2) 연구윤리 현장의 실무자가 실제로 경험한 바 있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연구진실성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지침 관련 정보를 제공

### (C)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안)의 구성

(1) 구성 원칙: 2018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 규정을 연구부정행위 검증 실무에 적용할 때 발생한 바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안내를 제공

(2) 구성 순서: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윤리 지침의 목적과 정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범위”, “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 “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 “연구윤리 지침의 영속성” 등으로 구성

#### (3) 내용 구성

1) 현행 지침 용어의 명확한 개념 정의,

2) 현장에서 발생한 바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례’ 제시,

3)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 규정의 융통성 있는 해석

4) 향후 지침 개정이나 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모범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우수사례’ 예시,

5) 연구윤리 지침 적용의 근거 법령 제시

- 25 -

(D) 「대학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책자(안) 목차

I. 머리말 1. 이 책의 목적 2. 이 책의 구성	VI. 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2. 교육부의 재조사 3. 조사결과의 보고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 5. 조사의 기록과 공개
II. 연구윤리 지침의 목적과 정의 1. 지침의 목적 2. 지침의 정의 3. 적용 대상과 방법 4. 적용 범위	IV.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범위 1. 연구부정행위 제보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III. 주체별 역할과 책임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대학의 역할과 책임 3.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4. 교육부의 역할과 책임 5. 자체 규정의 확립	V. 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2. 검증 주체와 검증 기간 3. 검증 기구 4. 검증 절차
IV.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범위 1. 연구부정행위 제보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VI. 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2. 교육부의 재조사 3. 조사결과의 보고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 5. 조사의 기록과 공개
V. 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2. 검증 주체와 검증 기간 3. 검증 기구 4. 검증 절차	

- 26 -

(E) 「대학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책자(안) 내용 예시

(4) 허위 제보에 의한 연구진실성위원회 업무수행 방해	⇒ 현장 실무자의 문제 제기
○ (허위 익명 제보) 연구부정행위 익명 제보가 가능함을 이용하여 고의적 또는 반복적 허위 제보 발생 가능.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허위 제보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제보 조사와 검증 판단)을 방해하므로, 이는 “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로 간주 가능(지침 제12조 제1항 제6호 관련).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고의적 또는 반복적 허위 제보에 적극 대응 필요.	⇒ 적절한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
<p>&lt;우수사례&gt; 허위 제보에 대한 대응책</p> <p>「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0조(제보)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p> <p>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p> <p>「성균관대, 전남대, 순천대, 동아대」: 공통으로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세모사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p>	⇒ 일선 대학의 자체 규정 우수 사례 예시

- 27 -

## 6 추가 제언

### (1) 대학 자체 규정의 표준화 노력

- 1) 대학 자체 규정을 교육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개정
- 2) 대학 자체 규정이 교육부 규정보다 엄중하도록 실천 운영

### (2) 독립성과 예산 보장의 명문화

- 1) 대학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은 오랜 노력으로 독립성 보장에 노하우가 있음
- 2) 대학 R&D 예산의 일정 부분을 연구진실성 업무에 배정하여 문제 발생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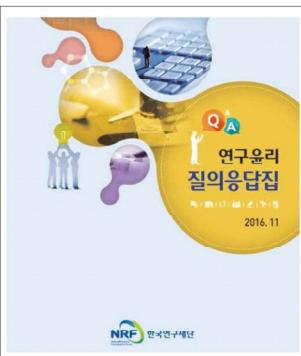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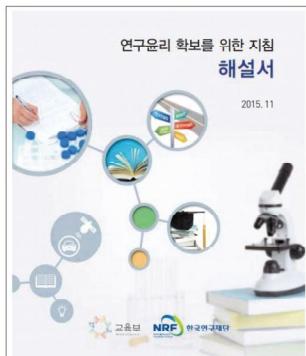
### (3) 연구윤리 전문 인적 자원 확보

- 1) 연구 유경험자 배치
- 2) 담당 인력의 연구윤리 정기 교육 이수 의무화
- 3) 복수 인력 배치로 업무 인수인계 역량 확보

### (4) 현재 가용자원의 활용

- 1) 기존 교육 정보 자료 속지

- 28 -



현재까지 보급된 다양한 정보 자료 활용으로, 현장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해결 가능

그러나 연구윤리 실무자의 찾은 교체로 관련 노하우 및 팀이 축적, 계승되지 못함

⇒ 그동안 연구재단 등이 심혈을 기울여 보급한 각종 정보 자료가 실무자의 찾은 교체로 저활용되는 상황 반복

- 2) 연구윤리 정보(지원)센터 적극 활용 - 타 기관을 경유하는 수고를 겪지 않도록 지속 홍보 필요
- 3) 대학간/지역별 담당자 네트워크 활성화 - 사례 공유와 외부 조사위원 참여 장려 필요

### (5) 자율적 판단능력 강화

- 1) 교육부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자체 규정 제정  
    실례 a)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자체 상설화(서울대, 연세대), 독립성 보장(고려대)  
    실례 b)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교육 담당 기능 부여(순천대)

- 29 -

- 2) 지침 규정의 숙지와 자율적 해석 능력 함양(⇒ 연구윤리 전문인력 확보와 밀접한 연결), 대학 내 법률 전문가 활용 필요 (4년제 종합대학은 대부분 적합한 인재가 있음)

(6) 교육부의 지원 노력

- 1) 지침 규정의 평이한 기술

현행 지침 규정은 매우 합축적.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현장 담당자에게는 낯설음

⇒ 규정 조항의 중복이 있더라도 plain language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명시할 필요

- 2) 자율성 부여의 명문화

a) 법령 적용에 대한 대학의 소극성 ⇒ 연구부정행위 검증에도 소극적으로 작용

b)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명문화

⇒ 대학 자체 연구진실성 확보의 자생력 강화

- 3) 연구윤리 기여에 대한 보상

a) 위해 가능성 등에 의해 연구진실성 검증 참여 기피 ⇒ 조사위원 신원 보장 명문화

b) “R&D” 연구진실성 확보에 기여하는 검증 참여 ⇒ “R&D” 과제 직접 참여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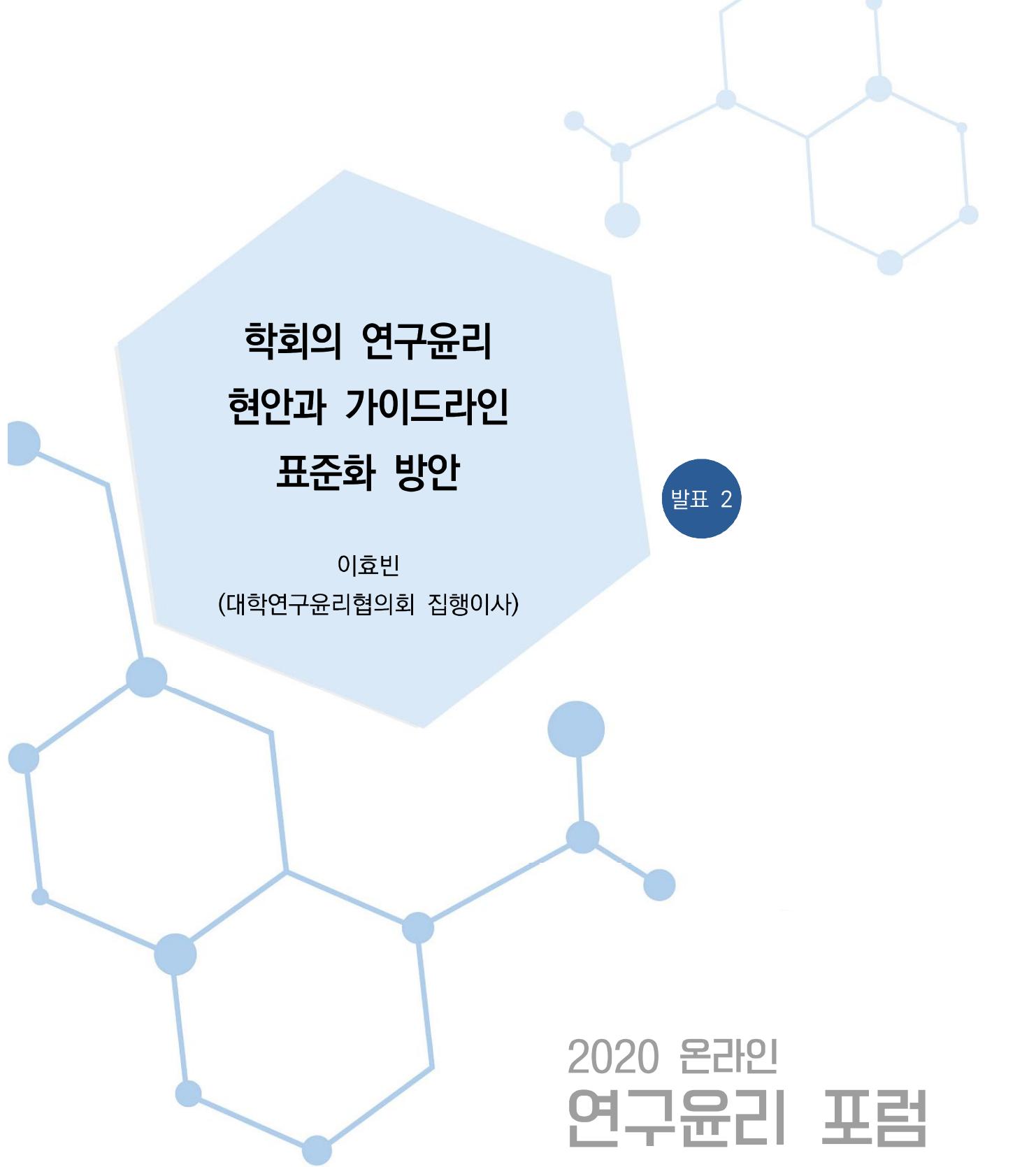
- 4) 정보제공과 네트워크 지원

a) 대학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진실성 검증 사례를 대학들에 제공

b) 대학간 연구진실성 담당자 정보교류 정례화, 공동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및 지원

<끝>

- 30 -



# 학회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발표 2

## 2020 온라인 연구윤리 포럼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



발표 2

## 학회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 방안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

2 0 2 0 연 구 윤 리 포 럼

# 학회의 연구윤리 현안과 가이드라인 표준화방안

발 표 자 이 효 빙

2020.03.27.

## CONTENTS

01

### 학회선정

- 학회선정
- 학회윤리현황 기준선정

02

### 학회현황

- 국내학회의 출판 윤리 현황
- 국내학회의 출판 윤리 현황 정리

03

### 이해관계자

- 편집인 지침
- 저자의 지침
- 심사자의 지침

04

### 출판윤리

- 동료심사
- 이해상충
- 논문철회
- 우려표명
- 저작권

05

### 연구윤리

- 윤리규정
-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제재 조치
- 기관과 협력방안

국내학회의 출판윤리 현황

01

### 국내학회의 출판윤리 현황

#### 1) 학회 선정

- 이공·의생명 분야의 학회 출판윤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회 선정

#### 회원수

이공·의생명분야 중 많은 회원 수 순으로 30개 선정

#### 학문적 대표성

학문적 대표성이 있는 학회 추가 선정

#### 최종 20개의 대표 학회 선정

- 이학분야 :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지구과학회
- 공학분야 : 한국화학공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과학회, 대한기계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 의생명분야 :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식품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수의학회, 한국간호과학회

## 01

### 국내학회의 출판윤리 현황

#### 2) 학회 평가 기준 선정

- 한국 학회의 출판윤리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 선정

**해외출판윤리** 해외 출판윤리 문헌 조사를 통해 해외 출판윤리 이슈 정리

**1·2 자문회의** 20개 대표학회의 편집장 및 윤리위원회와 이슈 발굴

#### 18개의 출판윤리 현황 진단을 위한 기준 선정

1. 저자됨의 정의/2. 기여자의 정의/3. 저자분쟁/4. 이해관계 상충/ 5. 심사기준/6. 심사자 준수 사항/7. 심사자 선정/8. 편집자 규정 및 준수사항/9. 논문철회 기준 및 절차/10. 우려표명/11. 정정기사/12. 저작권/13. 중복출판/14.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절차/15. 연구부정 발생 후 제재 조치 / 16. 윤리규정/17. 사사표기/18. 연구대상자의 보호

## 국내 학회 현황

## 02

### 국내학회의 출판윤리 현황

구분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	
1	저자됨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13곳	
2	기여자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10곳
3	저자분쟁	○	-	-	-	○	○	○	○	△	○	○	○	○	-	-	-	-	-	-	△	○	12곳
4	이해관계 상충	○	-	-	-	○	○	○	○	△	○	○	○	-	○	-	-	-	-	-	△	-	11곳
5	심사기준	○	-	-	○	○	○	○	○	○	○	○	○	○	-	-	-	-	-	○	○	○	4곳
6	심사자 준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5곳
7	심사자 선정	○	○	-	-	○	○	○	○	○	○	○	△	-	-	-	-	○	△	○	○	○	4곳
8	편집자 규정 및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4곳
9	논문출판기준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4곳
10	우려표명	-	-	-	-	-	-	-	-	-	-	-	-	-	-	-	-	-	-	-	-	-	0곳
11	정정기사	-	-	-	-	○	○	○	○	△	○	○	△	-	-	-	-	△	△	○	○	1곳	
12	저작권	○	○	-	○	○	○	○	○	○	○	○	○	-	○	○	-	○	○	○	○	○	7곳
13	중복출판	○	-	-	-	○	○	○	○	○	○	○	○	-	-	-	-	○	○	○	○	○	4곳
14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5곳
15	연구부정 발생 후 제재 조치	○	-	-	○	○	○	○	○	△	○	○	△	-	-	○	-	-	○	△	○	○	4곳
16	윤리규정	○	○	○	○	-	○	-	-	△	○	○	○	○	○	○	-	○	○	○	○	○	6곳
17	사사표기	○	-	○	-	○	○	○	○	○	○	○	○	-	-	-	-	○	○	○	○	○	4곳
18	연구대상자의 보호	-	-	-	-	○	○	○	○	○	○	○	○	-	○	-	-	-	-	-	-	-	9곳

## 국내학회의 출판윤리 현황

국내학회 출판 현황 정리

### 1) 국내학회 출판윤리 현황 정리

가장 잘 되어있는 출판 윤리 규정

- 저작권 양도 (17곳) : 저작권 이양 동의서만 있음
- 윤리규정 (16곳) :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윤리규정 존재 여부
- 심사 기준(14곳) :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심사기준의 규정
- 심사자 준수 사항 (15곳) : 심사자가 지켜야 할 심사자의 규정

가장 부족한 학회 윤리 규정

- 우려표명 (0곳) : 우려표명 기사를 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논문철회 기준 및 절차 (10곳) : 논문철회의 기준과 그 절차를 가지고 있는 학회
- 기여자의 정의(10곳) : 저자가 아닌 논문에 기여한 자나 기관에 대한 정의
- 이해상충(11곳) : 이해상충의 종류와 이해상충 선언에 대한 정의가 있는 학회

### 2) 문제점

- 윤리규정이 있는 많은 학회도 'COPE' 나 'ICMJE' 규정을 따름으로 정의
- 독자통신 등 출판 후 독자들이 논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부족

## “ 편집인의 지침 ”

- (**편집인의 정의**) 논문 투고부터 출판 그리고 출판 후 사후 관리의 과정에 관련되는 사람을 의미
- (**편집인의 책임**) 편집인은 출판 전 과정과 게재된 출판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짐
- (**편집권 독립**) 편집인은 학술지의 내용과 출판의 모든 절차에서 외부인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출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

### COPE - 편집인의 지침

- 편집인은 게재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 편집인은 상업적 고려와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전문가 심사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 편집인은 최대한 투명성과 완전하고 정직한 보고를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 편집인은 필요할 때 정정 및 철회 기사를 발행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혐의가 있는 사례를 추적하여 출판된 기록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 편집인은 심사와 편집상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추적해야 한다.
- 편집인은 인간 대상 연구와 동물 연구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선문가 심사자와 서사에게 기내되는 바를 전달해야 한다.
- 편집인은 편집상의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03

## “ 저자의 지침 ”

- **(중요성)** 저지됨(Authorship)은 저작물에 대한 공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의미함
- **(정의)** 저자란 연구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함
- **(저자의 순서)**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자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함

**한국통신학회 - 저지됨**

1.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2.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하며, 공동 저자 포함, 논문 투고, 논문 수정 등에 있어 모든 공동 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수학회 - 저자의 순서**

대한수학회에서는 저자를 저자 성명순(Authors' surnames in alphabetical order)으로 작성한다. 저자성명순 저지됨의 사용은 수학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수학의 특별한 성질로 인해, 학회는 수학 논문에서 제1저자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회는 출판의 여러 저자의 상대적 공헌도에 대해 주 궁금하지 않는다.

## 03

## “ 저자의 지침 ”

- **(교신저자)**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투고된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짐  
→(예) 연구윤리 심의, 임상시험 등록, 이해상충 보고, 저자 정보 제공, 연구결과에 대한 편집자와 독자의 질문에 대응
- **(저자의 소속 표기)** 저자의 연구실적 표기, 연구부정행위 책임 소재 등의 이유로 학술지는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을 표시할 것을 권장함  
→소속기관은 ① 연구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기관, ② 연구자(학생인 경우)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③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
- **(저자 분쟁)** 저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먼저 저자 간 자율적 합의를 권장하고 그 후 연구노트, 원고 및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야 함

03

## “ 심사자의 지침 ”

- (정의) 동료심사 시 투고된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 등을 고려하여 논문발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
- (심사자의 자격) 심사자는 심사대상 원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이를 편집장에게 밝히고 심사를 중단해야 함

### Royal Society of Chemistry Journals - 심사자의 자격

심사자로 등록하려면 CV 또는 이력서와 심사자 신청서(reviewer application form)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심사자가 될 수 있다.

- (1) 관련 분야에서 박사 수준(또는 동등한 자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2) 현재 활동 중인 연구자
- (3) 우리의 저널과 비교할 만한 저널에 동료 심사를 거친 하나 이상의 논문이 있는 경우

03

## “ 심사자의 지침 ”

**(심사자의 책임)** 심사자는 논문의 심사를 수락하기 전, 해당 학술지의 전문가 심사 범위, 심사 기밀유지 방법, 심사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를 따라야 함

-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
- 심사자는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해 반드시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평, 원고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됨
- 심사자는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됨
- 심사자는 저자의 성별, 사상, 직업, 종교, 직위, 정치적 신념, 논문의 출처, 연구비 수혜여부, 상업적 이해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함
- 심사자는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함
- 심사평은 건설적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됨

“ 동료심사 ”

- **(동료심사 제도)** 학회는 적절한 전문기에 의해 심사\*가 올바른 심사기 이후 어질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갖추어야 함
- **(심사자의 배정)** 편집인은 원고 주제에 맞는 적절한 전문가를 배정해야 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심사자는 제외해야 함
- **(심사자 제척)** 학술지는 투고자가 이해상충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심사자를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
- **(편집인 심사)** Desk Review 편집인은 투고된 원고의 학문적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고 접수 단계에서 거절할 수 있음
- **(심사의 판단)** 편집인은 원고 당 2인 이상의 전문가를 배정하여 심사하게 하고 심사자 간 판정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선임 심사자를 추가로 배정 할 수 있음

“ 이해상충 ”

- **(이해상충의 종류)** 재정적, 인적, 학문적, 임상적 이해상충이 있음
- **(이해상충의 예방)**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투고 받기 전 이해상충 서약서를 받음

**한국식품과학회 - 이해상충**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이 재성석 관계 아니면 저자의 연구에 부석설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 잠재적 이해상충의 예는 학문적, 개인적, 정치적 관계; 고용 관계; 상담 또는 명예, 재정적 연결 예를 들어 주식과 펀딩 소유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록 저자가 이해 상충이 없다고 느낄지도로, 다른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밝히는 것이 투명하고 신중한 절차가 될 수 있다. 모든 저자는 어떠한 사실적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식품과학회(FSB)는 독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이해관계 진술은 각 이름별로 밝혀야 한다. :

- 김은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음을 선언한다.
- 이는 음식회사 A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 박은 악학회사 B로부터 연설자 상을 받았고, 음식회사 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 만약 여러 저자가 이해상충이 없다고 선언하면, 이것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김, 이, 박은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 만약 모든 저자가 이해상충이 없다면, 이것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저자들은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 04

## “ 논문철회 ”

- **(논문철회 원칙)** 한번 출판된 논문을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논문철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정직한 실수, 연구부정행위, 중복출판, 비윤리적인 연구 보고 등이 있을 때 논문철회를 고려해야 함
  - 정직한 실수 : 논문의 중요 데이터나 자료가 정직한 오류로 인하여 잘못되어 연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 위조, 번조 표절과 같이 독자가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중복출판 : 하락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 데이터 또는 논문을 게재한 경우
  - 잘못된 심사 : 잘못되었거나 조작된 동료심사로 논문이 게재된 경우

## 04

## “ 우려표명 ”

- **(우려표명 정의)** 논문에 명백한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논문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편집인은 논문철회 대신 우려표명 기사를 발표할 수 있음
  - 논문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
  -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04

**“ 저작권 ”**

-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 (**양도**) 학술지가 저작권을 양도 받게 되면 저작재산권자로서 자유롭게 논문을 사용, 수익, 치분할 수 있음
  - (**이용허락**) 저작자(저자)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면서 학술지는 논문을 사용, 수익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저작권양도의 문제**) 저자가 저작권 양도계약에 동의하면 저자의 논문 전부 또는 일부를 영구적으로 학술지에 양도하게 됨. 이로 인해 저자는 자신의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사용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05

**“ 연구윤리 ”**

- (**예방**)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학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야함
  - 표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투고된 원고, 게재될 원고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표절검사 실시해야함
  - 투고자로부터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
  -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회는 여러 가지 연구윤리 이슈와 관련하여 이를 대응하고 학회 내의 연구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후 제재 ”

- (제재조치) 학회는 저지의 연구부정행위기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철회하고 연구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한국정보과학회

- ①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 ②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 ③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④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 기관과 협력방안 ”

- 연구기관&연구기관과 학회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

### 연구기관/교육기관

- 연구진실성 책임자(또는 사무소)를 두고 그들의 연락처 정보를 게재 및 공유함
-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어 출판된 논문의 신뢰성 또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사례를 학술시에 알려야 함
- 학술지가 저자됨의 분쟁, 이해상충, 정직한 실수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면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연구부정행위 또는 용납될 수 없는 출판 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이 출판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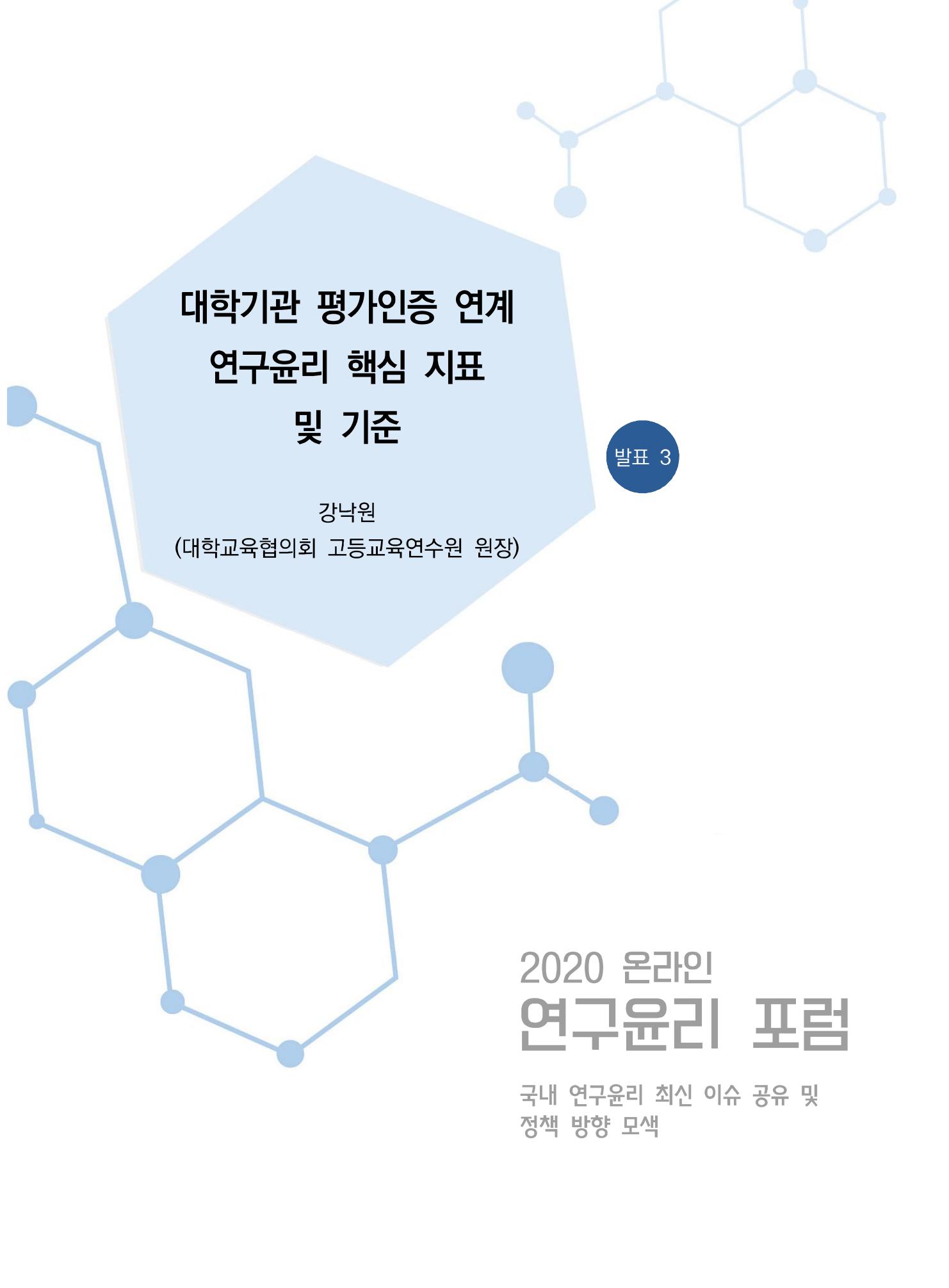
-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편집장의 연락처 정보를 게재해야 함
- 만약 연구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소속 기관에 알리고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철회 또는 정정 기사를 표명해야 함

과 목 이 름 이 나      영 문 타 이 들

THANK  
YOU

발 표 자      이      효      빈





# 대학기관 평가인증 연계 연구윤리 핵심 지표 및 기준

강낙원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원장)

발표 3

## 2020 온라인 연구윤리 포럼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



### 발표 3

## 대학기관 평가인증 연계 연구윤리 핵심 지표 및 기준

강낙원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원장)

2020  
연구윤리  
포럼

## 대학기관평가인증 연계 연구윤리 핵심 지표 및 기준

❖ 일 시 : 2020.03.27(금), 15:50-16:20  
❖ 발표자 : 강낙원  
❖ 소속 및 직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장



## 목 차

- I. 필요성 및 목적
- II.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 III.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 운영
- IV.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구윤리제도 연계 가능성 탐색
- V.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와 연구윤리제도 연계 방안

### I. 필요성 및 목적



#### ❖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

-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연구와 연구결과의 발표는 자율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동시에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요구받음(강인수 외, 2004)
- 대학의 연구윤리는 자율기제에 의한 자기점검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책무성 영역임

#### ❖ 대학의 높은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대학의 연구윤리 및 연구 관리의 중요성 증대

- 2018년 정부R&D사업비 19조7,759억원 중 대학이 수행한 R&D사업비는 4조5,364억원(22.9%)\*
- 2017년 정부R&D SCI(E)논문 39,032건 중 대학의 SCI(E)논문 성과는 30,319건(77.7%)\*\*

####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와 연구윤리제도 연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연구윤리 책무성 확보 노력 유도

- 대학사회의 자기점검 및 자율평가 체제인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 연계 연구윤리 핵심지표 및 기준 마련 ⇒ 대학 연구윤리 및 연구 관리 체계의 가이드라인 기능
- 대학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전적 예방 체제 구축을 통해 사회적 신뢰 확보 및 강화

[주] \*과학기술통계(<https://www.ntis.go.kr/rndsts/Main.do>)에서 추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 II.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2020  
연구윤리  
포럼

### ❖ 대학 연구윤리제도 추진 배경

- 2005년 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우리나라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연구 공동체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화
  - 연구윤리 교육을 통한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활동 강화
- 연구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
  - 국가 R&D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 \* '14년 17조6,395억원(4.3%↑)→'15년 18조8,747억원(7.0%↑)→'16년 19조444억원(0.7%↑)→'17년 19조3,927억원(2.0%↑)  
→'18년 19조7,759억원(2.0%↑)→'19년 20조5,328억원(3.8%↑)→'20년 24조2,000억원(17.9%↑)
  - '책임 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 증대

[주] 1.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2020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자료집  
2. 2014~2018년은 집행액, 2019~2020년은 예산액입니다.

## II.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2020  
연구윤리  
포럼

### ❖ 대학 연구윤리 관련 제도 주요 추진 경과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07.02.)
  - '07.02. 제정, 과학기술부→'08.07.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14.03. 교육부로 변경)
  - 검증시효 폐지, 표절 개념 재정의 등 지침 개정('11.06.)
  - 대학의 역할과 책임 반영, '부당 충복 게재' 추가, 대학 조사위원회 외부전문가 포함 지침 개정('15.01.)
-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http://www.cre.or.kr)) 설립·운영('07.12.~)
- 연구책임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이수 의무화('16.03.~)
- 연구 부정행위 세세 기준 강화, 최고 '파면' 가능('17.04.)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 연구자의 배우자·직계비속 등 연구 참여시 연구비 지원기관 사전승인 제도화('18.12.)
  - 2019년 학술지원사업 종합계획에 포함
-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안)」 발표('19.05.)

## II.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2020  
연구윤리  
포럼

### ❖ 대학 연구윤리 확립 추진 방향

비전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기관 차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책무성 강화 지원</li> <li>연구윤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li> <li>사전예방부터 시후 조치까지 전 단계에서 관리 체계화</li> </ul>								
주요과제	<table border="1"> <tr><td>1</td><td>사전예방 : 연구윤리 개념·규정 정비, 교육 강화 및 문화 조성</td></tr> <tr><td>2</td><td>사후조치 :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실태조사·공개</td></tr> <tr><td>3</td><td>인프라 구축 : 정부·대학의 연구윤리 역량 강화 지원</td></tr> </table>			1	사전예방 : 연구윤리 개념·규정 정비, 교육 강화 및 문화 조성	2	사후조치 :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실태조사·공개	3	인프라 구축 : 정부·대학의 연구윤리 역량 강화 지원
1	사전예방 : 연구윤리 개념·규정 정비, 교육 강화 및 문화 조성								
2	사후조치 :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실태조사·공개								
3	인프라 구축 : 정부·대학의 연구윤리 역량 강화 지원								
세부 추진과제	1. 사전예방	2. 사후조치	3. 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윤리 개념 재정립 및 규정 정비</li> <li>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강화</li> <li>연구윤리 인식개선 및 문화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철저한 시후관리</li> <li>대학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및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연구윤리지원센터 설치</li> <li>대학 연구윤리 조직 전문성·독립성 강화</li> <li><b>대학기관평가인증 도입 검토</b></li> </ul>						

[출처]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보도자료(2019.05.)

## II.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2020  
연구윤리  
포럼

### ❖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 ▪ 조사 개요

- 면담 대상 : 대학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 면담 방식 : 집단면담 (\* 총 4차례 권역별 면담 - 수도권, 경상권, 충청·호남권, 강원·수도권)
- 대학 선정기준 : 설립유형, 학교규모, 소재지, 대학기관평가인증(1, 2주기) 인증연도 고려

#### ▪ 면담 대상자 현황

- 총 13개교

##### [설립유형]

- 국립 : 2개교
- 사립 : 11개교

##### [학교규모]

- 대규모 : 8개교
- 중규모 : 5개교

소재지	설립유형	학교규모	학교 구분	소속	대학기관평가인증 연도	
					1주기	2주기
수도권 (7개교)	사립	대규모	A	산학협력처	2012	2018
			B	연구윤리센터	2013	2019
			C	연구처	2011	2017
			D	연구윤리팀	2013	2019
			E	연구처	2012	2018
	사립	중소규모	F	감사실	2012	2018
			G	연구윤리센터	2012	2018
			H	연구감사실	2012	2018
			I	연구감사실	2013	2019
			J	연구진흥팀	2011	2017
비수도권 (6개교)	사립	대규모	K	교부연구처	2013	2019
			L	산학협력단	2013	2018
		중소규모	M	연구윤리센터	2011	2017

## II.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2020  
연구윤리  
포럼

### ❖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 1. 대학 연구윤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

##### 1) 대학 연구윤리의 범위의 모호성

- 연구진실성 업무와 IRB 업무 중복에 따른 명확한 용어 및 범위 설정 필요
- 현재 대학의 연구윤리 업무는 대부분 연구윤리 교육, 연구부정행의 검증과 제재 등 연구윤리진실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 대학 연구윤리 규정의 명확성 및 적용의 강제성 필요

- 대학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윤리 쟁점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현행 연구윤리 지침과 대학 자체 규정의 실효성 부족
- 규정의 모호함을 최소화하고, 연구자에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무적 준수 규정 필요

##### 3) 대학 연구윤리 전담 업무 담당자 배치 여부 및 업무의 과중 정도

- 대학의 입장에서는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소요 경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
-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와 겹직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어려움

##### 4) 대학 연구윤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독립성 수준

- 연구윤리진실성, 생명윤리, 동물실험윤리 등을 개별 전담부서로 운영하기에 중·소규모 대학은 어려움이 있음
- 연구윤리 전담부서의 설치는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 기획 및 추진을 위해 필요

## II.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2020  
연구윤리  
포럼

### ❖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 1. 대학 연구윤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

##### 5) 대학 연구윤리 예산 편성 및 규모

- 면담대학들 대부분은 산학협력단이나 연구처 예산 내에서 연구윤리 관련 업무의 예산을 집행
-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윤리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6) 연구윤리 교육 이수 현황 및 의무화 필요

-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교원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도는 홍보의 부족의 문제가 아님
-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독립성과 권한 부여 및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 필요
  - ✓ 연구윤리 의무교육 대상을 대학 구성원 전체로 확대 필요
  - ✓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일정시간 이수 의무화 필요

##### 7) 연구윤리 교육 유형 및 방법

- 면담대학들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KIRD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
- 연구윤리 정규 교육과정 편성은 대학원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으나, 정규학점 이수가 아닌 Pass/Fail의 졸업필수요건 방식으로 적용

## II.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2020  
연구윤리  
포럼

### ❖ 대학의 연구윤리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 2. 대학 연구윤리의 대학기관평가인증 연계의 필요성

##### 1) 연구윤리의 대학기관평가인증 연계의 목적 및 연구윤리 적용 범위

-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연구윤리를 연계하는 것이 대학을 순위 매기거나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징계 등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됨
- 대학의 자발적인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윤리 체계 구축 및 활동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로서의 역할 남달 필요

##### 2) 대학기관평가인증 연계 연구윤리 지표 설정에 대한 우려

- 학교의 규모나 특성, 대학의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 시양
- 공동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적용 및 지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3) 대학 연구윤리의 대학기관평가인증 연계의 필요성

- 대학 연구윤리와 대학기관평가인증 연계는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 대학의 총장을 비롯한 부서의 장이나 다른 직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과 공식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임

## III.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 운영

2020  
연구윤리  
포럼

### ❖ 대학기관평가인증(university institutional accreditation)제도의 목적

####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란?

-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는 제도로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책무성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

####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목적

- 자율적인 질보장 체제로서 대학의 자체평가 역량 강화와 교육시스템 구축·개선에 기여

목적	주요 내용
대학교육의 질보장과 지속적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년간 자료에 근거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 확인</li><li>• 매년 정량준거의 기준값 충족 여부 확인 및 피드백</li><li>• 인증 획득 후 인증자격 유지 여부 모니터링 강화</li></ul>
대학교육의 성과 및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평가영역 설정</li><li>• 평가 인증 결과 공개 및 흥보 강화</li><li>• 정부 고등교육기관 평가결과와 연계</li></ul>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학의 특성 및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성과 도출 여부 확인</li><li>• 대학의 특성에 근거한 통합적 평가</li><li>•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li></ul>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PQN, INQAAHE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고등교육 질보장 네트워크 활동 강화</li><li>• 국외 평가·인증기구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 체계 강화</li></ul>

자료. 한국대학평가원(2019).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pp. 4-5.

### III.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 운영

2020  
연구윤리  
포럼

####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 추진 경과

-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립되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질관리체제로서 대학평가 도입, 1993년까지 시행
- 1994년~2006년까지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시
- 2010년부터 현재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 시행
  - 2010년 「고등교육법」개정으로 교육부가 대학기관평가인증 담당 기관을 인정하는 법적 권한을 가짐
  - 2010년 11월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이 4년제 대학기관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음(교육부, 2012)
  - 2011년~2015년까지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실시
    - \* 6개 평가영역, 17개 평가부문, 54개 평가준거로 구성
  - 2016년~2020년까지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실시
    - \*\* 5개 평가영역, 10개 평가부문, 30개 평가준거로 조정
    - ※ 모든 평가준거가 정량적인 측면과 정성적인 측면으로 구성,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경(한국대학평가원, 2019)
  - 2021년부터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실시 예정
- 2014년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에 따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

### III.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 운영

2020  
연구윤리  
포럼

#### ❖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구성 체계 : 일반 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1. 대학이념 및 경영	1.1 대학경영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3 대학 자체평가
	1.2 대학재정 확보	1.2.1 예산 편성 및 집행	1.2.3 감사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1.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2.2 교수·학습	2.2.1 수업	2.2.2 성적관리	2.2.3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3. 교직원	3.1 교수	3.1.1 교원 인사제도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3.2 직원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3.2.3 직원 전문성 개발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4.1 시설·장비	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4.1.2 학생 복지시설	4.1.3 노서관
	4.2 학생지원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5.1 대학성과	5.1.1 연구성과	5.1.2 교육성과	5.1.3 교육만족도
	5.2 사회적 책무	5.2.1 사회봉사 정책	5.2.2 사회봉사 실적	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 ❖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구성 체계 : 필수 평가준거

필수 평가준거

전임교원 확보율 / 교사 확보율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교육비 환원율 / 장학금 비율

[자료] 한국대학평가원(2019).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pp. 49-50.

## IV.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구윤리제도 연계 가능성 탐색

2020  
연구윤리  
포럼

### ❖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구윤리제도 연계 인식 조사

#### ▪ 조사 개요

- 설문대상 : 대학기관평가인증위원
- 설문방식 : 모바일 설문
- 설문기간 : 설립유형, 학교규모, 소재지, 대학기관평가인증(1, 2주기) 인증연도 고려
- 응답율 : 67.3%(\*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위원 162명 중 109명 응답)

#### ▪ 설문 응답자 현황

구분	응답자 수	(%)
대학설립유형	국·공립대(법인대학 포함)	(21.10)
	사립대학	(78.90)
평가인증위원 활동 경험	1, 2주기 평가 모두 참여	(38.53)
	1주기 평가만 참여	(2.75)
	2주기 평가만 참여	(58.72)
총 합계	109	(100.00)

## IV.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구윤리제도 연계 가능성 탐색

2020  
연구윤리  
포럼

### ❖ 설문지 구성 내용

구분	설문 문항	문항수
응답자 현황	1. 소속 대학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 2. 대학기관평가인증 위원 활동 경험 (1주기, 2주기, 1, 2주기 모두)	2
대학연구윤리제도에 대한 인식	1. 대학 차원의 교원 연구활동 지원에 연구윤리 준수 지원 활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가 2. 내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질 관리 개념에 '윤리 준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가 3.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4. 연구윤리제도를 '대학기관평가인증'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가	4
대학기관평가 인증에의 반영	1. 연구윤리 규정이 적절하며 구체적인가	1
	2. 연구윤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적절히 구성·운영되고 있는가 3. 연구윤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구성이 적절한가 4. 연구윤리 관리를 위해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고 있는가	3
	5. 위원들의 구성이 적절한가 6. 위원회의 독립성이 공정성이 적절히 보장되어 있는가 7. 위원회의 운영절차가 적절한가 8.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대한 조치 절차가 적절한가	4
	9. '교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이 적절히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는가 10.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이 적절히 개발·운영되고 있는가 11. '학부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이 적절히 개발·운영되고 있는가	3
계		17

## IV.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구윤리제도 연계 가능성 탐색

### ❖ 대학 연구윤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대학의 연구윤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나타냄
- 대학의 연구윤리제도의 ‘대학기관평가인증’에 포함할 필요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나지만, ‘매우 그렇다~그렇다’의 긍정 응답은 58.7%인 반면, ‘아니다~전혀 아니다’의 부정 응답이 1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설문 문항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긍정’	‘부정’		
대학 연구윤리제도 에 대한 인식	1. 대학 차원의 교원 연구활동 지원에 연구윤리 준수 지원 활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가	82.57	1.83	4.17	0.75
	2.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질 관리 개념에 ‘윤리 준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가	80.30	3.67	4.12	0.80
	3.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82.56	0.00	4.20	0.71
	4. 연구윤리제도를 ‘대학기관평가인증’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가	58.72	12.84	3.63	1.08

주. 긍정 응답 비율은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의 합산이며, 부정 응답 비율은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임.

## IV.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구윤리제도 연계 가능성 탐색

### ❖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연구윤리 규정과 제도 운영여건 조성’ 반영에 대한 인식

-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연구윤리 규정과 연구윤리제도 운영여건 조성에 대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 연구윤리제도 운영여건 조성에서 담당 직원 구성의 적절성과 예산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구분	설문 문항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긍정’	‘부정’		
대학 기관 평가 인증 에의 반영	규정	1. 연구윤리 규정이 적절하며 구체적인가	77.98	4.59	4.12
	연구윤리 제도 운영 여건 조성	2. 연구윤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적절히 구성·운영되고 있는가	74.31	8.26	3.96
		3. 연구윤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구성이 적절한가	56.88	12.84	3.65
		4. 연구윤리 관리를 위해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고 있는가	60.55	11.00	3.68

주. 긍정 응답 비율은 항목별로 ‘매우 적절’과 ‘다소 적절’에 응답한 비율의 합산이며, 부정 응답 비율은 ‘부적절’와 ‘매우 부적절’에 응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임.

## IV.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구윤리제도 연계 가능성 탐색

### ❖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반영에 대한 인식

- 위원 구성의 적절성,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의 적절성, 위원회 운영 절차의 적절성, 위원회 판정결과에 대한 조치 절차의 적절성 등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관련 요소의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구분	설문 문항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긍정’	‘부정’		
대학 기관 평가 인증 에의 반영	5. 위원들의 구성이 적절한가	79.81	6.42	4.11	8.87
	6.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적절히 보장되어 있는가	77.06	7.34	4.11	0.95
	7. 위원회의 운영절차가 적절한가	78.90	6.42	4.13	0.89
	8.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대한 조치 절차가 적절한가	78.89	5.50	4.15	0.88

주. 긍정 응답 비율은 항목별로 ‘매우 적절’과 ‘다소 적절’에 응답한 비율의 합산이며, 부정 응답 비율은 ‘부적절’과 ‘매우 부적절’에 응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임.

## IV.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구윤리제도 연계 가능성 탐색

### ❖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연구윤리 교육’ 반영에 대한 인식

- ‘교원’과 ‘대학원생’, ‘학부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평가요소를 대학기관평가인증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 그러나 ‘학부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요소 반영은 ‘교원’이나 ‘대학원생’ 대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구분	설문 문항	응답 비율		평균	표준편차
		‘긍정’	‘부정’		
대학 기관 평가 인증 에의 반영	9. 교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이 석설히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는가	69.73	5.51	3.90	0.88
	10.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이 적절히 개발·운영되고 있는가	72.47	5.51	3.97	0.89
	11. 학부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이 적절히 개발·운영되고 있는가	53.21	15.60	3.53	0.93

주. 긍정 응답 비율은 항목별로 ‘매우 적절’과 ‘다소 적절’에 응답한 비율의 합산이며, 부정 응답 비율은 ‘부적절’과 ‘매우 부적절’에 응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임.

## IV.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구윤리제도 연계 가능성 탐색

2020  
연구윤리  
포럼

### ❖ 소결

- 연구윤리제도의 세부 요소들을 대학기관평가인증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항목들에서 적절 이상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70%를 상회하였으나,
- 3개 항목(연구윤리 담당 직원, 연구윤리 예산, 학부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응답자들이 대학의 연구윤리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과 ‘지원’보다는 관련 규정의 저절성,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교수 및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
  - 일부 대상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항목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적 인식 수준은 학부생의 경우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 학부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 요소를 대학기관평가인증체계의 구조상 하위 요소로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V.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와 연구윤리제도 연계 방안

2020  
연구윤리  
포럼

### ❖ 기본 원칙

-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학 연구윤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대학들이 참여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 그 주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 \* 교원연구활동 지원에 연구윤리 준수 활동 지원을 포함시킬 필요성 82.57%가 긍정 응답
- \* 연구의 질 관리 개념에 ‘윤리 준수 내용’을 포함할 필요성 80.30%가 긍정 응답
- \* 대학 구성원 대상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필요성 82.56% 긍정 응답
-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학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 포함시킬 필요성 58.72%가 긍정 응답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와 연구윤리제도 연계를 위한 **기본 원칙 3가지**

- 첫째,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의 특성에 부합하여 **대학 연구윤리제도의 핵심 요소만 반영** 필요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사회적 책임성 향상을 위해 대학운영 전반에서 지켜야 할 ‘최소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
- 둘째,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 **구성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 연구윤리제도 포함 필요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구성체계는 국제적인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를 토대로 마련되었기에, 대학 연구윤리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특정 영역이나 부문을 과다하게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셋째,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학 연구윤리에 관한 내용을 **검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2021년에 시작되는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상세히 반영할 경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예측 가능성’훼손

## V.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와 연구윤리제도 연계 방안

2020  
연구윤리  
포럼

### ❖ 연계 모형

#### 1. A 모형 : 연구성과 준거 확장 모형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5영역(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의 5.1 부문(대학성과)의 세부 준거의 하나인 ‘연구 성과(5.1.1)’의 점검 사항 중의 하나로서 대학 연구윤리를 포함하는 모형

##### ■ 평가준거 5.1.1(연구성과) 관련 기관평가인증편람 수정(안)

###### □ 자체평가보고서 주요 내용

1.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2.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3.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4.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5. 대학연구윤리 정책 및 추진 내용: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 □ 근거 자료 (정보공시자료)

1.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2. 연구비 수혜 실적
3. 대학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팀당 조직, 인력, 예산 현황, 연구윤리(지식성) 위원회의 구성, 협약, 운영절차 및 운영신적, 연구윤리 교육신적

###### □ 점검사항

1.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는가
2.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는가
3.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는가
4.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는가
5. 대학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운영여건(조직, 인력 예산), 연구윤리(지식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신적이 적절한가?

주. 밑줄 친 부분은 대학연구윤리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할 내용임.

자료: 한국대학평가원(2019).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편람, pp. 138-139.

## V.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와 연구윤리제도 연계 방안

2020  
연구윤리  
포럼

### ❖ 연계 모형

#### 2. B 모형 :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준거 확장 모형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3영역(교직원)의 3.1 부문(교수)의 세부 준거의 하나인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3.1.3)’의 점검 사항 중 하나로 대학 연구윤리를 포함하는 모형
- 3.1.3은 ‘대학이 교수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준거로, 이 부문에서 ‘교수의 교육, 연구발표, 학회 참여 등과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 실적’과 연관된 내용으로 교수의 연구윤리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실적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 평가준거 3.1.3(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관련 기관평가인증편람 수정(안)

###### □ 자체평가보고서 주요 내용

1. 교수의 교육, 연구 발표, 학회참여 등과 관련된 행·재정 지원 실적: 최근 3년 자료
2. 대학연구윤리 정책 및 추진 내용: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3.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및 교내·외 연수 참여 실적: 최근 3년 자료
4.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
5. 연구년제 실시 현황: 최근 4년 자료
6. 학과(전공)별 조교 현황

###### □ 근거 자료 (정보공시자료)

1. (정보공시자료) 연구비 수혜 실적
2. (관련 규정) 교원의 연구비 지급 관련 규정, 연구년제 운영 규정, 조교 운영 관련 규정, 대학연구윤리규정
3. (현지확인자료) – 교수 전문성 개발 실적 근거 자료: 최근 3년 자료
  - 연구년제 실적 근거 자료: 최근 4년 자료
  - 학과(전공)별 조교 업무분장표
  - 연구윤리팀당 조직, 인력, 예산 현황, 연구윤리(지식성) 위원회의 운영 실적, 연구윤리 교육실적: 최근 3년 자료

###### □ 점검사항

1.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2. 교수의 교육, 연구 발표, 학회참여 등과 관련된 행·재정 지원 실적이 있는가
3.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제도가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가
4. 교원의 요구분석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가
5. 연구년제 실적이 있는가
6. 학과(전공)별 조교(교육 및 연구업무 중심)를 확보하고 있는가
7. 대학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운영여건(조직, 인력 예산), 연구윤리(지식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신적이 적절한가?

주. 밑줄 친 부분은 대학연구윤리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할 내용임.

자료: 한국대학평가원(2019).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편람, pp. 114-115.

## V.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와 연구윤리제도 연계 방안

2020  
연구윤리  
포럼

### ❖ 연계 모형

#### 3. C 모형 : 교육 및 교직원 영역 확장 모형

- 2영역(교육)과 3영역(교직원) 모두에 대학 연구윤리에 대한 점검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
  - 2.1 교육과정 부문의 '2.1.1(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세부 점검사항으로 학부생 대상 윤리교육을 추가하고,
  - 3.1 교수 부문의 '3.1.3(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준거의 점검사항으로 대학 연구윤리를 포함
- 연구윤리교육의 경우 특성상 전공교육 보다는 '교양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며,
- 수 대상 연구윤리제도를 3.1.3 평가준거에 추가하는 것은 연구윤리제도를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 제도 중의 하나로서 볼 수 있기 때문임

## V.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와 연구윤리제도 연계 방안

2020  
연구윤리  
포럼

#### 3. C 모형 : 교육 및 교직원 영역 확장 모형

##### ■ 평가준거 2.1.1과 3.1.3 관련 기관평가인증편람 수정(안)

<p>▶ 평가준거 2.1.1(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p> <p>□ 자체평가보고서 주요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양교육과정 편성과 교육목표 및 인재양성과의 연계성</li> <li>2. 교양교육과정 편성 체계</li> <li>3. 교양교육과정 운영 현황</li> <li>4. 101명 이상 대규모 교양과목 강좌 비율</li> <li>5. 전임교원의 교양과목 강좌당 비율</li> <li>6. 학부생 대상 연구윤리교육 현황</li> </ol> <p>□ 근거 자료 (정보공시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 규정 : 교양교육과정 편성 관련 규정 (첨부: 대학교육 등 교양교육과정 현황 자료)</li> <li>2. 현지화인자료</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교육과정 개설 현황 확인 자료: 수강신청 안내 책자, 1-2학기 수업시간표 등</li> <li>- 교양과목별 1년(1-2학기) 평균 수강학생 수</li> <li>- 전임교원의 평균 강의 시수(전공 및 교양 강의 실제 강의 시수 데이터 엑셀파일)</li> <li>- 학부생 대상 연구윤리교육 강좌 운영 실적</li> </ul> <p>□ 점검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학부의 교양교육과정은 교육목표 및 인재양성과 연계되어 있는가</li> <li>2. 교육과정 편성 원칙(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있는가</li> <li>3. 교양교육과정의 학점 체계는 적절한가</li> <li>4. 강좌당 1년(1-2학기) 평균 수강학생수가 적절한가</li> <li>5. 영역별 교양과목은 균형 있게 개설되어 있는가</li> <li>6. 학부생 대상 연구윤리교육 강좌는 적절하게 개설되어 있는가</li> </ol> <p>주. 밑줄 친 부분은 대학연구윤리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할 내용임. 사료: 한국내악평가원(2019). 2020년 내악기관평가인증편람, pp. 114-115.</p> </ol>	<p>▶ 평가준거 3.1.3(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p> <p>□ 자체평가보고서 주요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의 교육, 연구 발표, 학회참여 등과 관련된 행·제정 지원 실적: 최근 3년 자료</li> <li>2. 대학연구윤리 정책 및 추진 내용: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li> <li>3.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및 교내·외 연수 참여 실적: 최근 3년 자료</li> <li>4.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최근 3년 자료, 최근 3년간 평균</li> <li>5. 연구제제 실시 현황: 최근 4년 자료</li> <li>6. 학과(전공)별 조교 현황</li> </ol> <p>□ 근거 자료 (정보공시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공시자료: 연구비 수혜 실적</li> <li>2. (관련 규정) 교원의 연구비 지원 관련 규정, 연구제제 운영 규정, 조교 운영 관련 규정, 대학연구윤리규정</li> <li>3. (현지화인자료) - 교수 전문성 개발 실적 근거 자료: 최근 3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제제 실적 근거 자료: 최근 4년 자료</li> <li>- 학과(전공)별 조교 업무분장표</li> <li>- 연구모임단장 조직, 인력 예산 현황, 연구윤리(지식성) 위원회의 운영 실적, 연구윤리 교육실적: 최근 3년 자료</li> </ul> </li> </ol> <p>□ 점검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는가</li> <li>2. 교수의 교육, 연구 발표, 학회참여 등과 관련된 행·제정 지원 실적이 있는가</li> <li>3.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제도가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가</li> <li>4. 교원의 요구분석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가</li> <li>5. 연구제제 실적이 있는가</li> <li>6. 학과(전공)별 조교(교육 및 연구업무 중심)를 확보하고 있는가</li> <li>7. 대학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운영여건(조직, 인력 예산),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실적이 적절한가?</li> </ol>
---	--

## V.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와 연구윤리제도 연계 방안

2020  
연구윤리  
포럼

### ❖ 모델 간 장·단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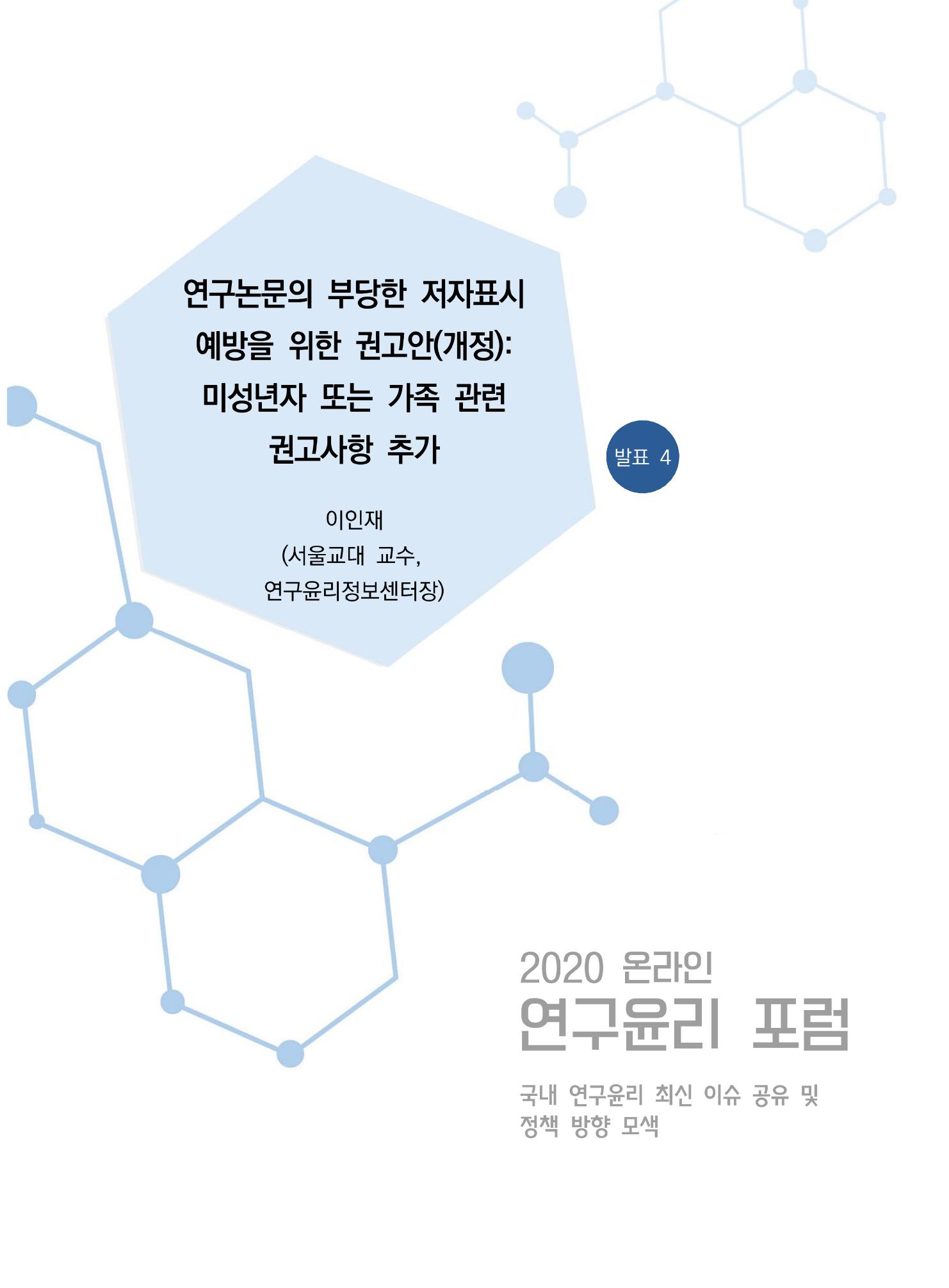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장·단점	
A 모형	▶ 연구성과 준거 확장 모형 - 5.1.1(연구성과)에 연구윤리제도를 반영하여 대학 차원에서 윤리적인 연구성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했는지를 평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기관평가인증을 최소로 변경하고 대학 원생 연구윤리교육 포함이 용이함. 인증평가 위원간 평가부담에 큰 변화가 없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생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평가요소를 반영하기 어려움</li> </ul>
B 모형	▶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준거 확장 모형 -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3.1.3)의 점검요소로서 대학연구윤리 내용을 추가함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의 평가요소(3.1.3)와 논리적으로 연계되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최소로 변경함</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생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평가요소를 반영하기 어려움</li> </ul>
C 모형	▶ 교육 및 교직원 영역 확장 모형 - 2.1.1 평가준거(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와 3.1.3 평가준거(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에 연구윤리 내용을 각각 추가함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 대상 연구윤리제도 외에 학부생 연구윤리 교육을 모두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기관평가인증체계와의 부합성이 낮음</li> </ul>

## V.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와 연구윤리제도 연계 방안

2020  
연구윤리  
포럼

### ❖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구윤리제도 연계 방안

-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해서 대학 연구윤리제도의 세부 요소들을 모두 대학사회에 정착시키려 하기 보다는, 대학기관평가인증체계와 부합하는 내용만을 일차적으로 반영하는 점진적인 전략 필요
- 양 제도 간의 연계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이 2021년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3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최소한의 연계만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대학 연구윤리 지표의 추가로 인한 대학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되,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에 초점을 두며,
  - 지속적인 대학 연구윤리에 대한 적용 범위 규정과 지표 반영 영역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향후 4주기와 5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한 단계적 적용 모델 도출 필요



##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안(개정): 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권고사항 추가**

발표 4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연구윤리정보센터장)

2020 온라인  
**연구윤리 포럼**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



발표 4

##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안(개정): 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권고사항 추가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 연구윤리정보센터장)

2020 연구윤리 포럼(2020. 3. 27)

# 연구 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이인재 교수

교육부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http://www.cre.or.kr)) 센터장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

## 감사의 글

- 본 권고 사항은 「한국연구재단」과 「전국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가 2019년 10월 1일 발표한 권고사항의 개정판으로 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 추가된 내용은 “미성년자와 이해관계자의 연구 참여 및 저자표시 가이드 마련”에 대한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실장이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 “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권고 사항 추가” 와 관련된 내용을 잘 종합해 주신 김해도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1장 총괄 권고 사항

## 1. 목적

- 본 권고 사항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저자를 표기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
-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지하고 연구 결과물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올바르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

## 2. 저자란?

- 저자란 해당 연구 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 (intellectual contribution)를 한 사람
-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행은 학문 분야마다 다름

## 2. 저자란? 주요 학문단체의 저자됨(authorship)에 대한 정의

### 1.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

저자는 다음 네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③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④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 2.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SE)

저자는 보고된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당 연구진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파트에 대해 책임지는 것 외에도 공동 저자가 연구의 다른 특정 파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자는 다른 공동 저자들의 기여가 진실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저자는 최종 원고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 2. 저자란? 주요 학문단체의 저자됨(authorship)에 대한 정의

### 3.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

저자는 연구의 개념, 계획, 실행 혹은 해석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개인은 저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연구에 기여한 다른 개인들의 기여도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저자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 4.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① 사회학자는 저자됨의 인정을 포함하여 실제로 수행했거나 기여한 작업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인정을 받는다.

② 사회학자는 주요 저자됨 및 기타 출판에서 기여도 인정이 지위와는 무관한 과학적이거나 전문적 기여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저자의 순서를 주장하거나 결정할 때, 사회학자들은 연구 및 저술 과정에 대한 주요 연구자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③ 학생의 졸업 논문이나 학위 논문에서 파생되었으나 저자가 여러 명일 때 논문의 제1저자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되어야 한다.

## 2. 저자란? 주요 학문단체의 저자됨(authorship)에 대한 정의

### 5. 인문학 및 기타 분야

- 인문학, 법학과 신학에서 저자됨은 저술 과정의 산물이고 대부분은 단독 저자의 형태이다.
- 아이디어 고안, 초안에 대한 의견, 기술지원 등의 공헌은 감사문에 표시된다.
- 인문학 전통은 대학원 과정 연구에 대한 저자됨의 구분에서 지도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과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은 졸업 논문의 단독 저자로 표시되며 지도교수나 논문 심사위원의 지도와 멘토링은 감사문에 표시된다.**

※ 출처 : COPE Council (9 June 2014), What constitutes authorship? COPE Discussion Document

[정준호 · 김옥주,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지침, 한국연구재단(2019), 제인용].

## 3. 부당한 저자 표시란?

-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
-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 3.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제1항 제4호) [교육부훈령 263호]〉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 유형

##### 1. 연구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 없이 저자로 표시된 자: 명예저자 (Honorary Authorship)

###### □ 강요저자(Coercive Authorship)

- 강요저자는 큰 범주에서 명예저자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당사자를 저자명단에 포함하고자 하는 동력(imetus)이 외부에서 작용한다는 것임
- 연구실이나 학과의 시니어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니어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논문에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이와 더불어 미묘한 "환경적(environmental)" 압력의 결과로 포함되는 저자들도 강요저자에 해당됨

###### □ 명예저자(Honorary Authorship)

- 손님저자(Guest author), 선물저자(Gift author), 명예저자(Honorary Author) 등으로 불리며 연구과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명단에 포함되는 경우를 지칭함
- 손님저자 또는 선물저자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상대방이 보답으로 자신의 이름을 저자명단에 포함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음
- 명예저자는 주로 주 저자(main author)의 상급자 또는 감독자가 명예저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논문의 책임 저자가 자발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로서 당사자들은 저자로 기재되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음  
-이는 자신의 연구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임

###### □ 상호지원저자(Mutual support authorship)

-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협약자의 이름을 모든 논문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용됨

###### □ 중복저자(Duplication authorship)

- 동일한 내용을 여러 저널에 싣는 것으로 이 역시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용됨

## 부당한 저자 표시 유형

### 2. 연구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가 있으나 저자명단에 빠진 자 : 유령저자(Ghost authorship)

#### □ 유령저자(Ghost authorship)

- 저자의 자격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저자 명단에서 빠진 사람

#### □ 저자됨의 거절(Denial of authorship)

- 유령저자(ghost authorship) 중에서 특히 심각한 경우 이를 '저자됨의 거절(denial of authorship)'이라고 지칭함

○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과학적 공동연구로 생각하여 데이터 생산을 한 연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소위 '공동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을 저자에 포함하지도 않고, 이 사람의 기여를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 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임

- 저자됨의 거절은 '표절(plagiarism)'의 한 형태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함

\* 참고 : Strange, Kevin. "Authorship: why not just toss a coin?"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Cell Physiology 295.3 (2008): C567-C575.

## 4.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 연구 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에게 바람직한 저자표시 가이드를 제시하고, 적극 권장해야 함

사이트 주소	주요 제공 내용
<a href="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a>	ICMJ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권고사항
<a href="https://publicationethics.org/authorship">https://publicationethics.org/authorship</a>	저자됨(authorship)과 기여함(contributorship)의 가이드라인과 저자 분쟁을 다루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COPE 웹사이트
<a href="https://ease.org.uk/publications/author-guidelines-authors-and-translators/">https://ease.org.uk/publications/author-guidelines-authors-and-translators/</a>	EASE (Th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의 저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a href="https://oir.hhs.gov/publicationsauthorship">https://oir.hhs.gov/publicationsauthorship</a>	미국 ORI의 저자와 출판에 대한 가이드라인
<a href="https://oir.nih.gov/sites/default/files/uploads/sourcebook/documents/ethical_conduct/guidelines-authorship_contributions.pdf">https://oir.nih.gov/sites/default/files/uploads/sourcebook/documents/ethical_conduct/guidelines-authorship_contributions.pdf</a>	NIH의 연구기여에 따른 저자 가이드라인
<a href="https://www.councilscienceeditors.org/wp-content/uploads/CSE-White-Paper_2018-update-050618.pdf">https://www.councilscienceeditors.org/wp-content/uploads/CSE-White-Paper_2018-update-050618.pdf</a>	CSE (Council of Science Editors)의 가이드라인

## 4.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사이트 주소	주요 제공 내용
<a href="https://www.britisoc.co.uk/publications/guidelines-reports/authorship-guidelines/">https://www.britisoc.co.uk/publications/guidelines-reports/authorship-guidelines/</a>	BSA (The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의 저자 가이드라인
<a href="https://www.pnas.org/content/115/11/2557">https://www.pnas.org/content/115/11/2557</a>	연구진실성을 고양하는 저자의 기여와 책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PNAS 웹사이트
<a href="https://www.springer.com/gp/authors-editors/editors/authorship-issues/4228">https://www.springer.com/gp/authors-editors/editors/authorship-issues/4228</a>	Springer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자관련 요구사항

○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요건은 이론적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음. 저자 표시는 독자에게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리고 적절한 사람들이 이를 인정받아 해당 연구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함.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가이드는 없으나, 저널 편집인들이 가장 많이 따르는 가이드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임.

※ 출처 :The COPE Report 2003, How to handle authorship disputes: a guide for new researchers.

○ ICMJE 저자표시 기준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저자표시의 기준과 관행은 매우 다양함. 예를 들어, ICMJE에 따른 저자는 권고사항에 제시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하지만, 복잡한 작업과 대량의 데이터 생성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는 ICMJE 기준에 따를 경우 누구도 저자로 적합하지 않는 논문이 발행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음. 이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는 저자의 공헌도가 남용된 것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허용 가능한 실무 관행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출처 : NASEM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y Press, 2017.

## 5.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해당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의 공적(credit)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

- 이와 관련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해당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자 및 감사 표시 기준에 따라 저자로 표시될 명단의 후보(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 등)를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후 기록하고, 논문의 최종 원고 초안에 대해 모든 저자 및 기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 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임.

# 저자(author) 여부에 대한 점검 방법(예시)

## 1. NIH 체크리스트

기여한 내용		저자 여부
연구의 디자인과 결과의 해석	독창적인 아이디어, 연구계획, 조언 등	저자로 인정 (비독창적인 아이디어 제공은 불인정)
	그 외의 다른 지적 기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저자로 인정
감독자의 역할	프로젝트 감독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저자로 인정
	교육과 훈련	저자로 불인정
	세1서사 멘토링	세1서사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저자로 불인정
행정 및 기술 지원	연구자금을 확보한 경우	저자로 불인정. 감사문(acknowledgement)에 포함 가능
	연구자원(동물 및 시약)을 제공한 경우	이전에 알려진 것(이면 저자로 불인정(새로운(novel) 것)이면 저자로 인정)
	환자를 제공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저자 인정은 가변적임
데이터 확보	실험을 통해 독창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	저자에 해당됨
	기술적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	통상적인 기술지원은 저자로 불인정(새로운 방법이 추가되었거나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경우는 저자로 인정)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assays: 실험 능을 놓해)	저자로 인정(매우 기초적인 작업인 경우는 불인정)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statistics: 통계)	저자로 인정(t-test 등 기본적인 작업인 경우는 불인정)
저술 및 기타	논문원고의 작성	제1 저자가 확실함
	원고를 읽고 조언을 준 경우	저자로 불인정(중요한 피드백을 준 경우에는 감사문에 포함)
	기타 (Lab Chief 등)	저자가 될 수 없음

# 저자(author) 여부에 대한 점검 방법(예시)

## 2. ICMJE 가이드라인

### □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요건

-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 ③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 ④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아울러 저자는 공저자들의 기여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상기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4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명시되어야 함
    - 이 기준은 저자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연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구자들에게만 저자됨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저자됨의 기준은 충족하나 ②번과 ③번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거부당한 공동 연구자들의 저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것은 아님
    - 따라서 ①번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원고의 작성, 검토, 최종 승인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함
  - 연구자들은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식별할 책임이 있음
  - 이상적으로는 연구를 처음 기획할 때,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을 할 때, 상기 기준에 따라 저자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저자순서는 모든 저자의 공동결정에 따라 정해야 함

# 저자(author) 여부에 대한 점검 방법(예시)

## 2. ICMJE 가이드라인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기준

- 교신저자는 원고의 투고,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출판 과정 동안 투고된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짐  
- 통상 학술지의 행정적 요구 사항(\*)을 책임지고 확인해야 함  
\* 예시: 저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임상시험 등록의 문서화, 이해상충 양식과 진술 등이 제대로 완비되었는지 여부 등
-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와 전문가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편집인의 질문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해야 함  
- 또 논문이 출판된 후 논문의 비평에 대응하고 논문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여 학술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 이에 협조해야 함

### □ 저자가 아닌 기여자(non-author contributors)

- 저자가 아닌 기여자들은 저자됨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저자로 기재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들의 공로는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저자로 기재되지 않은 기여 활동(예시) : 연구비 획득, 연구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일반적인 행정지원, 원고작성 보조, 기술적인 원고 교정, 언어 교정, 최종 원고 교정 등

- 저자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연구자들은 감사의 글(acknowledgment)에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되거나, 임상 조사자(clinical investigators) 또는 참여 조사자(participating investigators)와 같은 명목으로 기록될 수 있음

※ 기여자들이 기여한 바는 과학자문(scientific advisors), 연구 계획의 정밀 검토(critically reviewing the study proposal), 자료 수집(collecting data), 연구대상 환자의 제공 및 치료(providing and caring for study patients) 등과 같이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아울러,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은 연구의 자료와 결론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이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므로, 교신저자는 감사의 글에 표시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해 서면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 ICMJ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Updated December 2018[정준호·김옥주·윤경철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지침. 한국연구재단(2019), 제인용].

## 제2장 특수 관계인 관련 권고 사항

## 1. 개요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

## 2.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함.
  - **연구 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함**.

# 특수 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

## 특수 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성명)	(소속)	(직위)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지원액)	원
연구비 지출	(지원기관명)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록하지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액)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참여 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특정관계자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특정관계자의 유형 (해당하는 란에 ✓ 표시)

기준 (4촌 이내)			미습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특정관계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한 목적(해당하는 란에 ✓ 표시)

단순히 연구에 참관하고 배우기 위한 것 (논문 작성과 무관)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참여)
--------------------------------------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정관계자의 역할 및 활동계획

■ 상세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첨부(별도 양식 없음)

--

## 2.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연구노트 기록 및 보관**은 연구자 소속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소속기관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 2018. 10. 4., 일부개정을 참고. 동 지침(제11조)에 따르면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임.]

- **공저 논문 발표 전** : 소속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

#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 보고 양식

## 2.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함.

####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교육부훈령 263호]) 〉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경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2.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 소속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연구 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확인하여야 함.  
※ 주요 확인 사항(예시) : 특수관계인의 활동 계획, 이해상충 문제, 연구실 안전 등
  -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연구 참여를 통해 작성한 연구노트, 연구실 출입기록 등을 소속 연구자가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공저 논문 관리 :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 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함.

### 공저로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 기준

#### 공저로서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 기준

대학 등 연구기관이 특정관계자가 저자로 참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할  
하는 경우는 아래에 제시된 증명기준을 참고하여 내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개념)를 제시하였는가?
2.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였는가?
3. 연구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획득(설문, 축정, 인터뷰 및  
설문조사, 관찰 등)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저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
4.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데이터의 생산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과 해석을 기술한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는가?  
또한 이 내용이 논문의 최종본에 포함되어 있는가?
5. 둑고 논문 초안에 대하여 중요한 지적인 기여(토론, 수정 및 보완)를  
하였는가?

## 2.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교육부훈령 263호])〉

-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jlee@snue.ac.kr)



---

**2020 온라인 연구윤리 포럼**  
**국내 연구윤리 최신 이슈 공유 및 정책 방향 모색**

---

인 쇄 - 2020년 3월 24일

발 행 - 2020년 3월 27일

발행인 - 업창섭

발행처 -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서울특별시 종구 서소문로89, 17층 D-1725호

Tel. 0507-1365-1150

인쇄처 - 레인보우북스 Tel. 02-2032-8800(代)

---

